

經營學碩士 學位論文

자유무역협정(FTA)의 原產地규정과  
그 情報의 管理方案에 대한 研究



2010年 2月

釜慶大學校 大學院

國際通商物流學科

文 炳 述

經營學碩士 學位論文

자유무역협정(FTA)의 原產地규정과  
그 情報의 管理方案에 대한 研究

指導教授 金 銀 塚

이 論文을 經營學碩士 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10年 2月

釜慶大學校 大學院

國際通商物流學科

文 炳 述

# 文炳述의 經營學碩士 學位論文을 認准함

2010年 2月



主 審 經濟學博士 崔 洪 錫 (印)

委 員 經營學博士 尹 光 云 (印)

委 員 經濟學博士 金 銀 塚 (印)

# 목 차

표목차

그림목차

Abstract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3
제2장 FTA 원산지규정의 구조 및 이해	4
제1절 FTA 원산지활용 및 도입의 목적	4
1. 우리나라 기업의 FTA 활용현황	4
2. FTA 원산지규정 도입의 목적	6
제2절 원산지 개요	8
1. 원산지규정의 의의	9
2. 원산지세부기준별 특징과 주요 장단점	10
제3절 FTA 원산지결정기준	12
1. 완전생산기준	13
2. 실질적 변형기준	15
3. 보충적 원산지결정기준	32
4. 직접운송원칙	38

제3장 원산지규정의 위반사례 분석과 활용 방안.....	40
제1절 FTA 원산지규정의 비용과 위반사례 분석.....	40
1. 원산지규정의 비용.....	40
2. FTA 원산지규정의 위반사례 분석.....	41
3. 스파게티 볼 효과의 문제.....	46
제2절 원산지규정 핵심요소 활용 방안.....	49
제4장 FTA 원산지정보의 효율적 관리 방안.....	56
제1절 정부측면에서의 관리체계 효율화 방안.....	56
1. 원산지정보관리 전담기관 설립 및 통합관리.....	56
2. 원산지정보 관리를 위한 제도 지원.....	59
3. FTA 원산지확인서 교부제 도입.....	61
4. 원산지정보 관리 교육 및 홍보.....	62
제2절 기업측면에서의 관리체계 효율화 방안.....	63
1. FTA 원산지 정보시스템 활용.....	63
2. 원산지사전심사 제도 이용.....	67
3. 원산지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70
제5장 결  론.....	71
<참고문헌>.....	74

## 표 목 차

<표 1> 한국 수입에 대한 FTA 특혜관세 활용률.....	5
<표 2> 한국 수출에서의 FTA 특혜관세 활용률.....	6
<표 3> 원산지 세부 기준별 특징과 주요 장단점.....	12
<표 4> FTA 원산지결정기준 개요 .....	13
<표 5> 수산물 및 선상가공품의 원산지 인정기준 차이점.....	14
<표 6> 품목별 원산지 기준 현황.....	17
<표 7> 부가가치 방식에 의한 FTA 원산지규정.....	20
<표 8> 부가가치기준의 기술적 세부사항 차이점.....	29
<표 9> FTA별 주요 공정기준 적용물품 비교.....	30
<표10> FTA별 미소기준 차이점 비교.....	33
<표11> FTA별 불인정 공정의 유형.....	37
<표12> 자유무역협정 내용의 일반적 특성.....	47
<표13> FTA별 협정 양허계획.....	51
<표14> FTA별 원산지 증명 방식.....	53
<표15> FTA별 원산지증명서 발행기관.....	54
<표16> FTA별 원산지증명서 양식.....	54
<표17> FTA별 협정관련 규정.....	56
<표18> 원산지정보관리 전담기관의 업무 예시.....	59

## 그림 목 차

<그림1> 실질적 변형기준의 구조.....	15
<그림2> FTA 원산지 업무 체계도.....	56
<그림3> 원산지 사전심사 신청절차.....	70
<그림4> 기업의 원산지관리시스템 개요.....	71



# A Study on the FTA rules of origin and its information management plan

Moon, Byung-sul

Department of International Commerce and Logistics,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At this point, when our country is planning to sign simultaneous multilateral comprehensive FTAs, we need to pay our attention to a different aspect. It is to draw up measures to systematically manage the country-of-origin regulations, which are different and complicated for each FTA, and thus maximizing the benefit that our country's businesses gain from the FTAs. For the purpose, this paper will offer a structured comparison and analysis of the standards that determine the country of origin in free trade agreements such as the Korea-Chile FTA, Korea-Singapore FTA, Korea-EFTA FTA, and Korea-ASEAN FTA. Additionally, to cope with the spaghetti ball effect of the country-of-origin cost and regulations caused by the expansion of FTAs, it investigates and analyzes the case examples of violations of the country-of-origin regulations and constructs an FTA work system for country of origin as an effective way of managing core information related to the country-of-origin regulations in FTAs. Furthermore, it presents an opinion about a systematic method of managing country-of-origin information on the government and business side. First of all, it will devise a plan on how the government and

other related organizations can provide technical support that helps the businesses to build a system of managing country-of-origin information for themselves.

In other words, to maintain harmony with the flow of international trade, it will apply the 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system, which was developed by the World Customs Organization (WCO), exporter accreditation system, FTA certificate of origin issuance system, etc. Furthermore, at this point we need to make efforts to actively promote the Korea Origin Information Institute, which is an organization fully responsible for integrating and managing origin-related affairs that are shared by many institutes. This can be a way to completely manage and support country-of-origin information for each FTA, to improve the credibility and competitiveness of our country's export businesses. The businesses need to use the government's country-of-origin information system and build a system that systematically manages country-of-origin information for themselves. The FTAs that will be signed in the future must be based on the complete follow-up management of the previously signed FTAs. We also need to review the degree of FTA applications in trade with other countries and find and take appropriate measures against those factors that prevent the fulfillment and application of FTAs. And, the government and other related organizations must provide support for education and promotion of country-of-origin regulations and information management measures to businesses.

Key Words :

FTA, Origin Criteria, Spaghetti Bowl effects, Information management plan.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배경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의 70% 이상을 대외무역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경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해외수출시장의 확대, 통상 분쟁의 안정적 관리 및 경제통상협력관계의 제도적 틀을 공고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통상정책 여건을 감안하여 글로벌 FTA 네트워크 구축 전략을 추진해오고 있다. 2009년 3월에 한·호주 FTA 및 한·뉴질랜드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하였고, 걸프협력이사회(GCC)와의 FTA 제2차 협상 및 페루와의 FTA 제1차 협상이 있었으며, 유럽연합(이하EU)과의 FTA 제8차 협상을 개최하여 전체협상의 잠정 타결을 선언하였다. 불과 5년 전에 칠레와의 FTA를 가까스로 발효시켰고, 싱가포르와의 협상을 막 시작했던 것과 비교하면 격세지감(隔世之感)을 느끼게 하는 진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FTA 체결한 국가 및 지역 경제권은 한·칠레('04.4.1), 한·싱가폴('06.3.2), 한·EFTA<sup>1)</sup>(4개국), 한·아세안<sup>2)</sup>(10개국) 국가들이 있다. 이와같이 우리나라는 “동시다발적·포괄적 FTA 체결”정책에 따라 단기간 내에 FTA Hub국의 초석을 마련하였으며, 최근 거대경제권인 미국과 FTA 협정이 체결되어 국회 비준절차와 발효를 눈 앞에 두고 있으며, 또한 EU와 FTA 협정 체결에 즈음한 현 시점에서 이제는 이러한 관심을 다른 측면으로 돌릴 필요가 있다. 그것은 바로 FTA별로 상이하고 복잡한 원산지규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우리 기업이 FTA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결국 원산지규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스파게티

1) EFTA: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자유무역협정연합체

2) 아세안(ASEAN):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10개국으로 구성된 동남아시아국가연합. 다만, 태국은 한·아세안 FTA에 서명하지 않아 올해 상반기에 발효되지 않으므로 주의를 요함.

볼(Spaghetti Bowl)효과<sup>3)</sup>로 인한 경제적, 행정적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일이다. 왜냐하면, FTA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협정 상대국간 원산지관정을 통해 특혜관세가 적용되고 역외국에 대해서는 우회 수출입 금지 및 특혜관세 적용 배제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FTA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되어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역외물품으로부터 산업을 보호하는 가장 핵심적인 분야가 바로 원산지규정이기 때문이다. 간접적으로는 기업의 투자 및 생산방식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측면에서도 그 중요성은 상당히 크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FTA의 원산지규정에 의한 원산지 판정과 더불어 FTA 확대에 따른 원산지규정의 스파게티 볼 효과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원산지규정 위반에 관한 여러 사례를 조사하여 분석한다. 이러한 위반사례로부터 원산지결정기준의 핵심요소를 추출하여 FTA 무역비즈니스를 위해서 정부 및 기업체의 FTA 원산지정보 관리 효율화 방안으로서 원산지판정 매뉴얼을 제시한다. 그리고 우리 기업들은 FTA협정 국가와의 교역에서 도사리고 있는 위험을 파악하고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기관에서 제공하는 FTA 혜택 사전안내 서비스를 받아서 FTA 맞춤형 컨설팅을 적극 활용하며, 원산지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FTA를 활용하기 위한 철저한 학습과 준비, 전략적인 마인드도 필요하다.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FTA 관세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FTA별로 규정한 복잡·다양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여야 한다. 그러나 FTA별 물품의 원산지기준은 협정별로 결정기준방식이 서로 상이하여 우리기업이 한국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산지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적용상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3) 스파게티 볼 효과: 컬럼비아 대학의 Bhagwati 교수에 의해 지적된 원산지규정의 폐해로써 즉, 여러 나라와 동시에 FTA를 체결하게 되면 각 나라마다 다른 규정이나 절차를 확인함에 있어서 시간과 인력이 더 들어가게 됨으로써 거래비용 절감이라는 당초의 기대효과가 반감되는 현상을 말함.

본 연구는 전체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서론으로서 제1절에서는 연구배경을 중심으로 연구의 기본방향을 정립하고, 제2절에서는 연구의 방법 및 구성을 제시한다.

제2장에서는 FTA 원산지규정의 구조 및 이해를 위한 이론적 고찰로서 FTA 원산지결정기준에 관한 이론적·사례적인 연구를 병행하는데, 제1절은 FTA 원산지 활용 및 도입의 목적을 검토하며, 제2절에서는 원산지규정의 의의, 원산지세부기준별 특징과 주요 장단점 등을 살펴본다. 제3절에서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한·칠레 FTA, 한·싱FTA, 한·아세안FTA 및 한·E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결정기준의 기본원칙, 분야별특례와 품목별기준에 해당되는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등을 상호 비교·분석해 본다. 각 기준별 원산지 결정사례를 거래개요-거래흐름도-원산지결정기준-원산지 결정기준별 검토-원산지판정 순서로 원산지결정기준 추진절차를 분석하고 각 단계별 요인들을 검토한다.

제3장에서는 FTA 원산지규정의 엄격성과 복잡성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생산 및 행정비용을 검토하여 보고, 또한 스파게티 볼 효과의 문제 대처 방안을 찾아 본다. 제3절에서는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국내의 동향을 각 요소별로 국내의 위반사례를 분석하여 FTA 원산지규정의 핵심요소 활용방안으로서 FTA 원산지결정기준 매뉴얼을 5단계로 구성하여 제시한다.

제4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제시한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정보의 효율적 관리방안으로서 제1절 정부측면에서의 관리체계 와 제2절 기업측면에서의 관리체계 효율화 방안을 위한 원산지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기존의 제도와 새로운 제도인 AEO제도 및 수출용 원재료 공급자의 FTA 원산지확인서 교부제 도입, 원산지 사전심사 신청제도 이용 등을 제시한다. 그리고 FTA 원산지 정보시스템 활용 사례를 예시하여 이를 우리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서술(敍述)한다.

제5장에서는 결론으로서 본 논문을 전체적으로 요약한 후 정책적 시사점을 검토하고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제2장 FTA 원산지규정의 구조 및 이해

### 제1절 FTA 활용현황 및 도입의 목적

#### 1. 우리나라 기업의 FTA 활용현황

우리 기업들은 한·미 FTA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우선 한·미 FTA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수출 NEGOSI 한·미 FTA 관세철폐(인하)효과를 감안해서 하겠다.”라고 40%가량의 업체가 얘기했고, “신규 해외시장 개척시 FTA를 활용하겠다”라고 13% 가량이 의견을 제시했다(정승환, 2008, pp36). 현재 발효되어 작동하고 있는 4개 FTA<sup>4)</sup>의 상품협정에서의 특혜관세 활용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FTA 특혜관세 활용률’<sup>5)</sup>을 통해 살펴본다. 이는 양자 혹은 다자간에 체결된 FTA를 통한 관세인하 혹은 철폐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尺度)가 된다.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그리고 한·ASEAN FTA를 대상으로 한 특혜관세 활용률 분석에서 각각의 FTA는 특혜관세 활용률에서 큰 편차를 보인다.(김한성, 2009)

##### (가) FTA별 수입 활용률

한국이 이미 발효한 4개 FTA에서 체결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한국수입에 대한 FTA 특혜관세 활용률은 아래 표에 나타나 있다.

4) 4개 FTA협정은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4개국), 한·아세안(9개국) 등이다.

5) 특혜관세 활용률이란 일정기간 동안 FTA에 따라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입재화의 전체 수입액 중 실제로 특혜관세 혜택을 받은 수입액의 비중을 의미함

<표1> 한국 수입에 대한 FTA 특혜관세 활용률

기간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한-ASEAN <sup>6)</sup>
1년차	77.7%	28.2%	43.2%	27.0%
2년차	93.8%	31.4%	41.9%	-
3년차	93.6%	-	-	-
4년차	93.3%	-	-	-
누적	90.5%	29.8%	42.5%	27.0%

출처: 김한성(2009), 한국 FTA 특혜관세 활용 현황 및 시사점.

위의 표에서 한국이 최초로 발효한 한-칠레 FTA의 경우 4년 평균 90.5%라는 매우 높은 특혜관세 활용률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에 한-싱가포르 FTA와 한-EFTA의 경우 활용률은 각각 평균 29.8% 와 42.5%로 나타내고 있으며 싱가포르의 경우 높지 않은 활용률은 중계무역국인 싱가포르의 특수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마지막으로 한-ASEAN FTA는 발효 첫 해인 2007년 6월~2008년 5월 1년간 27.0%의 활용률을 기록하며 이는 발효 첫 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저조한 특혜관세 활용을 보이고 있음. 수입 활용률이 낮은 데에는 특정 품목(천연가스)의 특이한 상황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나) FTA별 수출 활용률

현재 입수가 가능한 칠레와 ASEAN 국가에 대한 활용률을 측정하였다.

6) 한-ASEAN FTA는 2008년 5월을 기준으로 한국과 FTA가 발효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라오스, 베트남만을 대상으로 함.

<표2> 한국 수출에서의 FTA 특혜관세 활용률

	활용률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누적
한·칠레 FTA	93.1%	95.8%	96.7%	98.7%	96.9%
한·ASEAN FTA <sup>7)</sup>	14.4%	-	-	-	14.4%

출처: 김한성(2009), 한국 FTA 특혜관세 활용 현황 및 시사점.

한국 수출에 있어서 한·ASEAN FTA 특혜관세 활용률은 비록 추정치이지만 약 14.4% 정도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며 이는 한국이 ASEAN에 수출함에 있어 한·ASEAN FTA에서 명시된 특혜관세혜택을 누리는 비중이 매우 낮다는 것을 보여 준다. 낮은 이유로는 발효 1년차로 관세인하 폭이 낮다는 점과 ASEAN에서 한국 상품을 수입하는 업자들의 FTA 활용 의지가 낮다는 점이다. 단기적으로 활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 2. FTA 원산지규정 도입의 목적

FTA 체결국내에서 거래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는 원산지규정의 충족 여부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역경제통합의 경제적 이익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그 결과 원산지규정은 FTA 협상에서 중요한 쟁점분야로 등장하게 되었다. 또한 원산지 규정은 협정내용 및 운영에 따라 미묘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 (가) 비역내산 물품의 우회수입방지

7) 한·ASEAN FTA 활용률은 한국의 수출 실용률을 바탕으로 일반품목군의 관세인하 90%와 한국 수출의 약 30%가량만이 실질적으로 관세를 납부한다는 가정하에 추산된 수치임.

역내무역에 특혜관세를 양허하는 경우 역내국에서 생산된 제품에 한에서만 낮은 관세가 허용되는 바, 역외국의 역내국을 통한 우회수입으로 인한 무역왜곡을 방지하려는 원산지규정에 있어 주요사항으로 고려된다. 양국간 특혜무역협정의 체결을 통한 경제적 효과가 제3국의 간접적 진출로 인해 저하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국간 원산지규정을 강화하는 이른바 '이중 자물쇠(Double Lock)'의 수단으로써 원산지규정을 이용한다.(곽재석, 2007.) 그 결과 우회수입방지를 위한 원산지규정의 강화는 이들 체결국을 주요 수출시장으로 삼고 있는 역외국가 들에 대하여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원산지를 통한 역외국의 역내국 시장접근에 대한 규정 강화는 아래에서 언급할 외국인 직접투자의 직접적 요인이 된다.

#### (나) 회원국간 교역확대

특혜무역협정의 체결은 역내 시장의 규모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원산지규정에 의거하여 역외국들의 제품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므로 회원국간 교역확대를 통한 무역창출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회원국간 교역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비회원국으로부터 관세가 낮은 회원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수입품이 역내 회원국으로 재수출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 결국 역내교역 확대를 위해서는 원산지규정이 중요하다. 따라서 특혜무역협정 체결로 발생할 수 있는 역외국의 우회수입을 방지하기 위해 회원국간 원산지규정을 강화하는 것은 역내교역 확대와는 상반(trade-off)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 (다) 외국인투자 유입

체결국이 아닌 역외 국가는 원산지규정으로 인한 인위적 경쟁력의 저하를 역내

직접투자 등을 통하여 상쇄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역외 국가는 특혜무역협정 권으로의 직접투자에 있어 원산지규정의 내용을 주요 결정요인으로 고려할 것이다. 과거 NAFTA 출범을 전후하여 멕시코에 대한 직접투자가 증가했던 실례가 있다.<sup>8)</sup> 그러나 엄격한 원산지규정은 우회수입방지에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만약 부가가치의 기준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모기업으로부터의 핵심부품조달 한계 등으로 해외투자 유치에 있어 오히려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것이다. 한편 역외국이 무역전환효과를 상쇄하기 위하여 역내국으로 생산기지를 인위적으로 이전함에 따라 비용면에서 비효율적인 곳에 투자가 발생하는 이른바 투자 구조의 왜곡(歪曲)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런데 실제 주요 자유무역협정의 원산지규정으로부터 우회수입방지, 역내가공 및 역내교역의 촉진 그리고 역내 외국인 직접투자유인 등의 목적에 따른 특징을 명확하게 구분해내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 주요 이유로는 다음의 두 가지를 제시(提示)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미국, 싱가포르, 칠레, 멕시코 등 각각 어느 한 국가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들 국가와 FTA를 체결한 상대 계약 국가들은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가 원산지규정을 통하여 의도하는 목적은 일관되지 않고 서로 다를 수 있다.

둘째, 원산지규정의 주요 목적으로 생각되는 우회수입방지, 역내가공 및 역내교역의 촉진 그리고 역내 외국인 직접투자유인 등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특히 원산지규정의 내용이나 체계와 관련하여 배타적이기보다는 오히려 상호 보완성이 더욱 강하기 때문이다.

## 제2절 원산지 개요

---

8) 멕시코의 경우 NAFTA 체결 논의가 시작된 1991년부터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이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협정이 발효된 1994년 이후에도 FDI의 유입이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음.

## 1. 원산지규정 의의

원산지(Contry of Origin)의 정의는 “생산된 물품의 국적(國籍)”을 의미하는 것으로 동·식물의 경우에는 성장한 나라를, 제조품은 생산·제조·가공 과정이 이루어진 국가를 말한다.

원산지규정이란 회원국이 상품의 원산지 국가를 결정하는데 법률, 규정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적인 판정이라 할 수 있다. 즉 특정제품의 국적인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제반 기준 및 절차를 의미한 것으로 법령이나 행정규칙을 말한다. 수출입 상품에 표시되는 제조국, 조립국, 수출국, 경유국, 생산국, 가공국 등이 일반적인 개념이라면, 원산지는 원산지규정에 근거하여 적용되고 각종 무역정책수단(Trade Measures)에 활용되는 법적·행정적 개념으로 전자와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원산지는 정치적 정체성을 지닌 국가를 의미하나 식민지, 속령 또는 보호령과 중국 귀속 후의 홍콩 등과 같이 독립적 국가가 아닌 지역도 원산지가 될 수 있다. 최근 원산지규정 협상은 다자적 차원과 양자간 차원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다자적 차원에서는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간 비특혜 원산지규정을 위한 통일 원산지규정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양자간에는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특혜원산지규정이 논의되고 있다. WTO 통일 원산지규정 협상은 1994년 UR 협상의 결과로 『WTO 설립협정』이 제정되었고, 이 협정의 부속서로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이 포함된 후 1995년 5월부터 세계관세기구(WCO:World Customs Organization)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어 2006년 중으로 협상을 마무리하고 3년간의 유보기간을 거쳐 전 세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WTO 통일원산지규정(Harmonized Rules of Origin)이 제정되면 원칙적으로 반덤핑, 세이프가드, 상계관세, 원산지 표시, 무역통계, 관세할당, 각종 쿼터 등 모든 비특혜 무역정책수단

에 적용된다.

특혜원산지규정은 상품의 시장접근과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무역정책 수단으로서 기본 목적은 역외수입의 억제를 통한 역내수입 확대에 있다. 하지만 원산지 인정 규정이 엄격하면 할수록 무역전환에 따른 부정적인 경제효과가 크며 무역과 투자를 왜곡시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sup>9)</sup>

자유무역협정 하에서의 원산지규정은 이러한 판정기준을 이용하여 상품의 시장 접근과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무역정책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즉 원산지규정은 그 자체의 불명확성, 복잡성, 차별적 적용 가능성과 각 국가들마다 상이한 형태를 보여 상당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국제무역상 주요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다. 콜롬비아대학 Bhagwati 교수는 복잡하고 엄격한 원산지규정의 폐해를 “스파게티 볼 효과(Spaghetti Bowl Effects)”라고 부르면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구로다 하루히코(黒田東彦) 아시아개발은행(ADB)총재는 “아시아 지역에 자유무역협정(FTA)이 지나치게 확산되면 무역의 복잡성을 증대시켜 스파게티 볼 효과의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sup>10)</sup>. 오히려 FTA로 행정 비용이 늘고 자유로운 무역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실제로 국내 수출기업들은 짧은 기간에 FTA체결국과 협상국이 많아지면서 종종 혼선(混線)을 빚고 있다.

## 2. 원산지 세부기준별 특징과 주요 장단점

실질적 변형의 판정은 세번변경기준(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을 원칙으로 하고 부가가치기준(value added criterion)과 주요공정기준(specific process criterion)을 보완적으로 사용하거나 이 기준들을 서로 조합하여 사용하

9) 정인교·외(2005), 우리나라 FTA 원산지규정(ROO) 연구 및 실증분석 내용 참조.

10) 정인교·외(2005) “우리나라 FTA 원산지규정(ROO) 연구 및 실증분석” 내용 참조.

기도 한다. 이들 각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곤란한 점이 있다. 따라서 물품의 특성별로 병용하거나 서로 조합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세번변경기준은 원재료와 제품의 HS번호(세번) 변경여부를 기초로 원산지를 결정하므로 원산지결정이 신속·정확하고 객관적이어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HS 품목분류체계상 가공단계로 품목번호가 배치(配置)되어 있지 아니한 물품은 적용하기 곤란한 단점이 있다<sup>11)</sup>. 부가가치기준은 제품 및 원재료의 가격등락에 따라 원산지가 수시로 변할 수 있고, 원가조작이 가능하여 원산지결정에 상당한 마찰이 발생된다.

주요공정기준은 특정공정 수행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하므로 객관성은 확보되지만 생산공정을 왜곡시키거나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도입을 저해(沮害)하는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각 기준별 주요 장단점을 비교·정리하면 아래<표 3>와 같다.<sup>12)</sup>

<표3> 원산지 세부기준별 특징과 주요 장단점

구분	주요 장 단 점
세번변경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재료와 완제품간의 HS번호 변경여부 확인</li> <li>* 신속·정확하고 객관적이거나, HS 품목분류체계상 가공단계별로 배열되어 있지 않은 물품은 적용 곤란</li> </ul>
부가가치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정문이 간단·명료하며, 협상시간 단축</li> <li>* 자의적인 원가조작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국별로 회계기준이 상이할 경우 마찰 소지</li> <li>* 기술개발비용·유통비용·상표비용 등도 원가에 포함되므로 실제 생산활동이 없는 경우에도 원산지가 인정되는 모순이 발생하여 역외산 물품의 우회 수입유발.</li> <li>* 제품 및 원재료의 가격 등락에 따라 원산지가 수시로 변동되어 안정적</li> </ul>

11) (예)HS 8715의 경우 유모차와 그 부분품을 동시에 분류하고 있는데, 이 경우 부분품을 수입하여 유모차를 제조하여도 부분품과 제품의 HS번호가 동일하여 아무런 세 번변경이 발생하지 않는다.

12) “FTA 관세특례법 설명회 자료”에서 일부 발췌, 재정경제부, 2006.

	특혜세율 적용이 곤란
주요공정기준	* 특정공정의 수행여부 확인 * 객관적이나 빠른 속도로 출현하는 새로운 제품의 생산공정을 반영하기 곤란하여 기술발전에 걸림돌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등 각 원산지 세부기준별로 함유하고 있는 모순점과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보충기준이 사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보충 기준으로는 미소기준(De Minimis), 누적기준(Accumulation), 원산지불인정공정 또는 최소공정기준(Non-qualifying operation or minimal operation) 등이 있다.

## 제2절 FTA 원산지결정기준

먼저 FTA 원산지결정기준의 전체적 개요를 정리하면 아래<표4>와 같다.

<표4> FTA 원산지결정기준 개요

구 분	종 류	
일반기준	기본 원칙	완전생산기준, 역내가공원칙 충분가공원칙, 직접운송원칙
	분야별 특례	누적기준, 최소기준, 중간재 대체가능물품, 세트물품, 간접재료 부속품·예비부품·공구, 포장·용기
품목별기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결합기준, 선택기준	

출처: 김동수(2009), FTA 원산지 심사 및 사례.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체결한 한·칠레FTA, 한·싱FTA 및 한·E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상호 비교·분석해 본다.

## 1. 완전생산기준(Wholly obtained criterion)<sup>13)</sup>

완전생산기준은 당해 물품의 전부를 완전히 생산·가공 또는 제조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으로 채약당사국(이하 “역내”라 함)에서 채굴한 광산물, 재배·수확한 농산물, 수렵 또는 어로작업에 의해 획득한 물품이 그 주요대상이다.

(가) 소·말·돼지·닭 등 산 동물의 경우에는 역내에서 번식되어 사육한 것만 해당된다. 예컨대, 아르헨티나에서 수입한 송아지를 칠레에서 일정기간 사육하여 국내로 수입한 경우 당해 수입 소의 원산지는 칠레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므로 원산지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역외에서 수입한 씨앗(seed)·인경(bulb)·근경(rootstock)·삽수(插樹)<sup>14)</sup> 또는 기타 산식물의 일부에서 성장한 농산물 및 원예작물은 원산지가 인정된다.

(나) 영해 밖의 해저 또는 해저층에서 채취·채굴한 원유·광산물 등 해저자원이나 기타 물품의 경우에는 역내 국가가 영해 밖의 해저를 탐사하거나 채굴할 수 있는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역내산(域內産)으로 인정된다.

(다) 역내에서 행하여진 생산과정에서 발행한 폐기물(waste) 및 부스러기(scrap)와 역내에서 수집되어 사용이 끝난 물품중 원재료 회수용으로 적합한 것도 역내산으로 인정된다. 또한 역내산으로 인정되는 것을 원료로 하여 역내에서 완전히 생산한 물품도 완전생산물품에 해당된다.

13) 성윤갑(2007) “FTA 원산지 해설” p56~57 참조

14) 삽목하려고 식물체에서 잘라낸 뿌리나 줄기, 잎 등을 말함.

(라) 수산물의 경우 영해 內에서 획득한 것은 선박의 국적여하를 막론하고 연안국을 원산지로 인정한다. 외국에서 치어(稚魚)를 수입하여 자국에서 양식(fish farming)한 수산물의 경우에도 원산지가 인정된다. 영해 밖의 공해(outside territorial sea)상에서 획득한 수산물 또는 선상가공품의 경우 획득한 선박이 자국적인 때에 한하여 원산지를 인정한다. 그러나 자국산 선박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에 있어서는 아래 <표5>와 같이 서로 상이(相異)한 점이 있다.

<표5> 수산물 및 선상가공품의 원산지 인정기준 차이점 비교

구 분	자국선박 요건	영해의 범위
한·칠레 FTA	기국요건+ 등록요건	-칠레:EEZ <sup>15)</sup> 포함 -한국:EEZ 불포함
한·싱가포르 FTA	기국요건+ 등록요건	EEZ 불포함
한·EFTA	기국요건	EEZ 불포함
한·아세안 FTA	기국요건+ 등록요건	EEZ 불포함
한·미 FTA	기국요건+ 등록요건	EEZ 불포함

출처: 정인교외(2005) “우리나라 FTA 원산지규정(ROO)연구 및 실증분석”.

또한 원산지 목적상 “영해(territorial sea)”의 범위와 관련해서도 다소 상이하다. 핵심은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영해에 포함시키느냐 여부이다. 일반적으로 EEZ은 국제법상 영해에 포함시키지는 않는다. EEZ를 영해에 포함시킬 경우 선박의 국적과 관계없이 동 수역에서 획득한 수산물은 연안국으로 원산지를 인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 한·칠레 FTA에서 칠레의 영해는 EEZ를 포함하지만 한국의 영해에 EEZ는 포함되지 않았다. 나머지 한·싱FTA 및 한·EFTA에서는 모두 국제법상 인정되는 영해만 포함한다. 즉 EEZ는 영해에 포함하지 않는다.

15)EEZ: Exclusive Economic Zone(배타적 경제수역)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수역으로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엔국제해양법상의 수역을 말한다.

## 2. 실질적 변형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

실질적 변형이란 당해국에서 제조, 가공과정을 통하여 물품이 생산되어 가치가 창출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제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보충규정을 두고 있다. 물품의 특성에 따라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양 기준을 선택적으로 사용(선택기준:alternative rule), 또는 兩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원산지를 인정하는 조합기준(combination rule/hybrid rule)을 사용하기도 한다. 주요공정기준(specific process rule)은 섬유·의류제품 일부에만 사용한다.

<그림 1> 실질적 변형기준의 구조



출처: 정인교외(2005), 우리나라 FTA 원산지규정(ROO)연구 및 실증분석.

### (가) 세번변경기준(CTC: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sup>16)</sup>

세번변경기준은 어느 기준보다 객관적이고 예측 가능성이 높아 FTA에서 가장

16) 성윤갑(2007), "FTA 원산지 해설" p58~59 참조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아래 <표6> 참조). 이는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 또는 부품의 세번과 일정수준 이상 상이한 세번의 제품이 생산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여기서 일정수준이라 함은 품목에 따라 HS 2단위(Chapter), 4단위(Heading) 또는 6단위(Subheading)가 달리 적용될 수 있다. 품목별 구체적인 수준은 FTA에 따라 각기 다르다. 양국간의 투자·교역관계, 산업구조 및 경쟁력 등에 따라 FTA 대상국별로 원산지기준이 달리 적용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2단위 변경기준(CC: Change of Chapter)이 가장 엄격하며 다음으로 4단위 변경기준(CTH: Change of Tariff Heading)이 엄격하다고 볼 수 있고, 6단위 변경기준(CTSH: Change of Tariff Subheading)은 비교적 완화된 기준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내경쟁력이 취약한 농수산물 또는 민감산업물품의 경우 2단위 또는 4단위 위주의 비교적 엄격한 원산지기준을 사용 하는데 비하여 수출경쟁력이 뛰어난 제품의 경우 6단위 변경기준을 사용한다. 그러나 HS품목분류체계가 지니는 한계로 인해 물품의 특성에 따라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하거나 조합하여 사용하는 품목도 많다. 또한 세번변경기준을 사용하는 때에도 특정호 또는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원산지를 불인정하는 방식<sup>17)</sup>을 사용하기도 한다.

<표6> 품목변 원산지 기준 현황

	제1류~제81류		제82류~제97류		합계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품목수 <sup>18)</sup> (비율 <sup>19)</sup>	품목수 (비율)	품목수 (비율)	품목수 (비율)	
한-칠레 FTA	2,850 (75%)	942 (25%)	516 (36%)	916 (64%)	5,224
한-싱가포르	3,542	250	748	684	5,224

17) 예: 한-싱 FTA 및 한-EFTA에서 HS 2402호의 담배의 경우 CTH(4단위변경기준)를 채택하면서 HS 2403호에서 변경된 재료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FTA	(94%)	(6%)	(52%)	(48%)	
한-EFTA	2,273 (60%)	1,519 (40%)	159 (11%)	1,273 (89%)	5,224

출처: 광재석(2007), “FTA 원산지규정의 구조 및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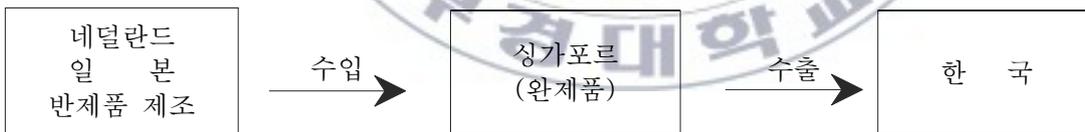
[예시] 세번변경기준에 의한 원산지 결정사례

同 사례는 한-아세안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에 의하여 유선전화용 교환기(제 8517.30소호)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 의하여 6단위 세번변경기준(CTSH)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i) 거래 개요

네덜란드 현지공장 등에서 수입한 교환기 반제품을 수입하고 싱가포르에서 생산한 일부 주요 부품을 이용하여 싱가포르 소재 P회사에서 교환기를 완성 후 한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의 원산지 결정사례이다.

(ii) 교환기의 거래 흐름도.



(iii) 교환기의 구성요소.

18) 품목수(2006년 6단위 품목수 기준)-제1류~81류:3,792 품목(A). -제82류~제97류:1,432 품목(B)

19) 비율= 품목수 × 100  
(A 또는 B)

교환기의 부분품을 크게 5개 반제품으로 분리할 수 있다. 즉, Plate Assembly, Board Assembly, Main Board Assembly, Scan Assembly 및 Exchange Assembly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iv) 주요 부분품의 원산지 확인하여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 교환기 주요부분품 및 완제품의 품목분류번호 비교

주요 부분품			⇒	완 제 품		
품 명	제조국	품목번호		품 명	제조국	품목번호
PLATE ASSY	네덜란드	8517.90		교환기	싱가포르	8517.30
BOARD ASSY	싱가포르	8517.90				
MAIN BOARD	싱가포르	8517.90				
SCAN ASSY	일 본	8517.90				
EXCHANGE ASSY	싱가포르	8517.90				

출처: 성윤갑(2007), FTA 원산지 해설( 품목번호는 HSK 2002 기준).

(v) 적용 원산지결정기준 및 규정(한-아세안FTA 협정)

품목번호	품 명	원 산 지 인 정 요 건
8517.30	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 교환기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8517.19호 내지 제8517.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것.

(vi) 원산지 국가 판단.

동 교환기는 교환기의 주요 부분품인 Plate Assembly(제8517.90소호) 및 Scan Assembly(제8517.90소호)등이 비원산지 부분품이고, 이 부분품을 이용해서 싱가

포르에서 완제품을 제조한 행위는 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였기 때문에 싱가포르가 원산지 국가가 된다.

(나) 부가가치기준(Ad valorem percentage rule/Value added criterion)<sup>20)</sup>

부가가치기준은 제품의 생산과정에 일정수준 이상의 역내가치를 부가(추가)시킨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이다. 물품의 생산이 1개국 국가만이 아니라 2개국 이상에서 생산되었다 하더라도 협정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일정 수준의 부가가치가 발생하면 역내산으로 인정한다. 엄밀한 의미에서 실질적 변형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으나 세번변경이 실질적 변형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제조가공 공정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한다. 부가가치기준의 종류는 순수 부가가치기준, 선택기준, 조합기준으로 나뉘어진다. 이 기준(基準)을 사용하여 원산지를 판정(判定)한 사례와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순수 부가가치기준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받는데 사용되는 기준에는 크게 세 가지 기준이 있다. 첫째, 원산지자격을 부여하는데 요구되는 국내 혹은 역내가치(域內價値) 비율의 최소비율을 규정하는 국내가치함량(DC: Domestic Content)기준 또는 역내가치함량(RVC: Regional Value Content)기준이다.

둘째, 역외산 부품 및 원재료의 금액이나 수량이 일정 기준 이하로 사용된 경우 원산지 자격을 부여하는 수입산 함량(MC: Import Content)기준<sup>21)</sup>이다.

20) 성윤갑(2007), “FTA 원산지 해설”p85~92 참조

21) MC 기준:  $\frac{\text{비원산지 재료가격}}{\text{제품가격}} \times 100$

셋째,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부품 중 원산지산 부품의 가치비율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것을 규정하는 부품가액(Value of Parts:VP)기준이다.

여기에서 NAFTA 등 미주지역 FTA에서는 역내가치함량(RVC)기준 50% 또는 60% 등을 사용하고 있으며, EU를 비롯한 PANEURO시스템을 사용하는 유럽지역에서는 수입산함량(MC)기준 30%, 40%, 50% 등을 사용한다. 아시아지역 FTA에서는 RVC와 MC 등의 부가가치기준을 다양하게 사용하나, AFTA의 경우에는 세 번변경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RVC 40% 기준의 간단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사용하기도 한다.

<표7> 부가가치방식에 의한 FTA 원산지규정

구 분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한-ASEAN
기준가 격	FOB	FOB	EXW	FOB
부가가 치 공식	공제법/집적법 <sup>22)</sup> 선택 $RVC = \frac{AV - VNM}{AV} \times 100$ $RVC = \frac{VOM}{AV} \times 100$	공제법 <sup>23)</sup> $RVC = \frac{CV - VNM}{CV} \times 100$	MC방식 <sup>24)</sup> 비원산지 재료가격 제품가격 $\times 100$	공제법/집적법 선택 $RVC = \frac{FOB - VNM}{AV} \times 100$ $RVC = \frac{VOM}{FOB} \times 100$
부가가 치 수준	공제법:45% 이상 집적법:30% 이상	45%~55%	40%~70% (공제법 환산시)	40%
역내추 가 가공품	중간재의 원산지 인정시 비원산지재료 100% 역내산으로 인정 중간재의 원산지 불인정시 중간재에서 역내산 재료비 공제			

- 22) Build-up Method: 역내부가가치 비율을 계산할 때 제품가격 대비 원산지 재료가격을 직접 계산하는 방법.  
 23) Build-down Method: 역내부가가치 배율을 계산할 때 제품가격에서 비원산지 재료가격을 제한 나머지 부분을 역내 생산부분으로 보는 방법.  
 24)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  
 25) 부가가치기준: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를 고려하여 특정한 비율 이상의 부가가치를 생산한 제

출처: 안재진(2008), “FTA 체결 확대에 따른 원산지정보 관리의 중요성과 효율화 방안”.

위 <표7>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별 부가가치방식에 의한 원산지규정을 비교·분석한 것으로서 AV(Adjusted value)는 조정가격(제품기준가격)<sup>26)</sup>을 말하며, VNM(Value of Non-Originating Materials)은 비원산지 재료가격, VOM(Value of Originating Materials)은 원산지 재료가격, CV는 FOB가격에 기초하여 조정된 관세가격을 의미한다.

## ② 선택기준

선택기준이라 함은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이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및 제조공공정기준 중에서 2개 이상의 기준을 규정하고 그 복수의 기준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선택된 원산지결정기준만 충족하면 해당 물품을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선택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은 개별 FTA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로 규정(規定)하고 있다.

첫째, 세번변경기준에 있어서 2단위 세번변경기준(CC),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및 6단위 세번변경기준(CTSH) 중 한 가지와 부가가치기준에 의한 직접법, 공제법 및 순원가법<sup>27)</sup>에 의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한·아세안 FTA에 있어서 파인애플(2008.20소호)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또는 40% 이상의 역내부가 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규정하여 2단위 세번변경기준(CC)과 부가가치기준의 선택기준에 해당된다.

---

조 및 가공작업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것.

26) 조정가격(Adjusted Value): 관세평가협정 제1조 내지 제8조, 제15조 및 이들 조항의 주해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말하며,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제외되지 않은 비용, 부과금 및 지출금을 상품의 관세가격으로부터 제외하여 조정된 가격.

27) 역내부가가치 비율을 계산할 때 제품의 순원가에서 비원산지 재료가격을 제한 나머지 부분을 역내 생산부분으로 보는 방법

둘째, 세번변경기준에 있어서 2단위 세번변경기준(CC),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및 6단위 세번변경기준(CTSH) 중 한 가지와 제조가공공정기준 중 선택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제조가공공정기준은 세 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합기준에 많이 활용되므로 이러한 사례는 많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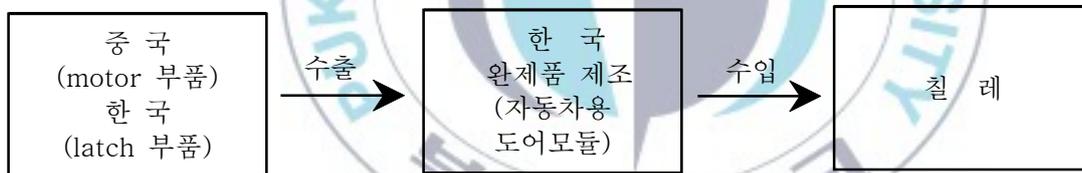
셋째, 부가가치기준에 의한 직접법, 공제법 및 순원가법 중 한 가지와 제조가공공정기준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예시] 선택기준에 의한 원산지 결정사례.

(i) 거래 개요

중국산 부품과 국내에서 생산된 부품을 조달하여 제조한 『자동차용 도어모듈』을 칠레에 수출하는 경우의 원산지 결정사례이다.

(ii) 거래 흐름도.



(iii) 원산지 결정기준

세번변경기준은 “다른 4단위 세 번으로부터 제8707호 내지 제8716호로 변경되어야 한다” 그리고 부가가치기준은 “역내부가가치가 공제법 45%이상, 직접법 30%이상일 경우에 원산지가 인정 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한-칠레FTA 협정)

(iv) 원산지 결정기준별로 검토.

세번변경기준 충족여부는 비원산지 재료인 중국산 Motor(HS 8501호) 와 원산지 미확인재료인 Speaker(HS 8518호) 등이 세 번과 완성품인 자동차용 모듈 세 번 8708호의 4단위가 서로 다르므로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한다.

그리고 부가가치기준을 검토하면 한-칠레 FTA의 부가가치 기준은 한-칠레 FTA는 LC(Local Contents)법<sup>28)</sup>을 채택, 직접법과 공제법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하게 하고 있으며, 상품가격은 국제 운송비용을 제외한 관세가격(실제지급액). 재료비에 국제 운송비는 제외하며, 무료(할인)조달 및 자가 생산의 경우 생산비용에 이윤을 가산한다. 운송비(국제+ 국내), 조세(환급액 제외), 관세사 수수료, 폐기물 비용(재활용분 제외)는 원산지 재료비에 가산(加算)하거나, 비원산지 재료에서 공제(控除)한다.(한-칠레FTA 협정)

\* 부분품별 가격 구성내역(출처: 인천세관 심사총괄과(2009), 부가가치기준사례)

구분	품명	원산지	품목번호	가격(W)
재료비	DR-Latch	한국	8302	10,000
	PNL-DR Module	한국	8708.29	1,500
	G/Rail A,B,C	한국		500
	Speaker	미확인	8518	10,000
	W/Harness	한국		13,000
	DR-Latch	한국	8302	2,500
	O/S H이 Base	한국		2,000
	I/S HDL Assy	한국		2,000
	P/W-Motor	중국	8501	18,500
	DR-Motor	중국	8501	1,000
	Switch-L/UN Lock	중국	8301	500
	소계			61,500
	노무비 및 경비			2,500
	관관비 및 이윤			1,000
	공급단가		8708.29(완)	65,000

28) LC법: 원산국 부가가치가 상품가격의 일정 비율 이상일 것

공제법에 의한 원산지 결정은 역내 부가가치비율이 53.8%로 공제법 기준(45%이상)을 충족한다.

$$\text{(계산) 부가가치비율} = \frac{65,000(\text{상품가격}) - 30,000(\text{비원산지재료비})}{65,000(\text{상품가격})} \times 100 = 53.8\%$$

직접법에 의한 원산지 결정은 역내 부가가치비율이 48.5%로 직접법 기준(30%이상)을 충족한다.

$$\text{(계산) 부가가치비율} = \frac{31,500(\text{원산지재료비})}{65,000(\text{상품가격})} \times 100 = 48.5\%$$

(v) 원산지 국가 판정:

세번변경기준 및 부가가치기준(직접법, 공제법)을 모두 충족하므로 『자동차용 도어모듈』의 원산지 국가는 한국이다.

### ③ 조합기준

조합기준이라 함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및 제조가공공정기준 중 두가지 이상의 결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도록 하는 기준을 말한다. 실제에 각 FTA별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살펴보면, 제조가공공정기준은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보완(補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합기준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첫째, 세번변경기준에 있어서 2단위 세번변경기준(CC),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및 6단위 세번변경기준(CTSH) 중 한 가지와 부가가치기준에 의한 직접법, 공제법 및 순원가법에 의한 원산지결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둘째, 세번변경기준에 있어서 2단위 세번변경기준(CC),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및 6단위 세번변경기준(CTSH) 중 한 가지와 제조가공공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도록 조합하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한-칠레 FTA에서의 남자용 또는 소

년용 오버코트(제6101호)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101.10소호 내지 제6101.30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우리나라 또는 칠레에서 재단(또는 편물)·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여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과 재단, 봉제 등 제조가공공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도록 하는 조합기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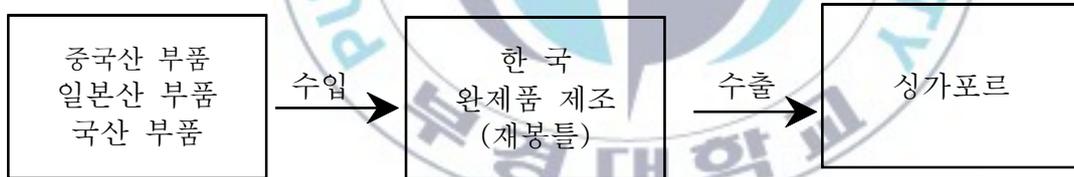
셋째, 부가가치기준에 의한 직접법, 공제법 및 순원가법 중 한 가지와 제조가공 공정기준을 조합(組合)하는 방법이다.

[예시] 조합기준에 의한 원산지 결정사례.

(i) 거래 개요

중국산부품, 일본산부품 및 국산부품을 조달하여 제조한 산업용 『재봉틀』을 싱가포르에 수출하는 경우의 원산지 결정사례이다.

(ii) 거래 흐름도.



(iii) 원산지 결정기준

세번변경기준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조합기준은 “세번변경기준(소호변경)+ 50%이상 역내부가가치 발생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한-싱FTA 협정)

(iv) 원산지 결정기준별 검토

먼저 세번변경기준 충족여부는 비원산지재료 세번(HS 8452호)와 완제품 세번(HS 8452호)이 동일하므로 세번변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다음으로 세번변경기준 및 부가가치기준 검토하면, 한-싱가포르 FTA의 부가가치 기준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이다. 다만, 50%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LC(Local Contents)법을 채택하며, 직접법과 공제법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하게 하고 있으나, 상품가격은 국제 운송비용을 포함한 과세가격(실제지급액). 재료비에 국제 운송비 및 국내조달재료 매입제비용을 포함한다. 무료(할인)조달 및 자가 생산의 경우 생산비용에 이윤을 가산하고, 가산 및 공제요소 없다.(한-싱FTA 협정)

\* 부분품별 가격 구성 내역(출처: 인천세관 심사총괄과(2009), 부가가치기준사례)

구분	품명	원산지	품목번호	가격(W)
재료비	Needlee Bar	일본	8452.30	10,000
	Fixed-Moving Knife	일본	8452.90	20,000
	Loader & Spreader	일본	8452.90	15,000
	Looper	일본	8452.90	13,000
	Bobin	일본	8452.90	13,000
	Plate	중국	8452.90	12,000
	Arm	중국	8452.90	4,000
	Screw	중국	8452.90	4,000
	Holder	한국	8452.90	5,000
	Shaft	한국	8452.90	2,000
	Bracket	한국	8452.90	2,000
	소계			100,000
국내산 재료 매입 제비용				5,000
국제 운송비				5,000
노무비 및 경비				20,000
판관비 및 이윤				30,000

공급단가		8452.29(원)	160,000
------	--	------------	---------

공제법에 의한 원산지결정은 50%미달이므로 원산지결정기준 미충족하며,

$$(계산) \text{ 부가가치비율} = \frac{160,000(\text{상품가격}) - 91,000(\text{비원산지재료비})}{160,000(\text{상품가격})} \times 100 = 43\%$$

직접법에 의한 원산지결정을 보면 50%미달이므로 원산지결정기준 미충족한다.

$$(계산) \text{ 부가가치비율} = \frac{9,000(\text{국산재료비}) + 5,000(\text{매입제비용}) + 5,000(\text{운송비})}{160,000(\text{상품가격})} \times 100 = 11.8\%$$

(v) 원산지 국가 판정:

세번변경기준 및 조합기준(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어느 하나도 충족하지 못하므로 원산지 국가는 한국으로 인정 받을 수 없다.

#### ④ 부가가치기준의 기술적 세부사항.

한-칠레 FTA에서는 공제법과 직접법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한-싱 FTA의 경우 공제법만 사용토록 하였고, 한-EFTA는 MC기준<sup>29)</sup>을 적용하였다. 순원가법<sup>30)</sup>은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에서 특정 자동차 품목에 적용하는 부가가치비율계산으로서 순원가는 생산자에 의해 발생한 모든 비용 중 판매촉진을 위한 비용(마케팅 및 사후 판매서비스 포함), 로열티, 선적 및 포장비, 허용범위를 넘는 이자 등을 뺀 금액으로서 이 방법으로 계산하면 공제법에서 사용되는 비율보다 낮

29) MC(value of import content):수입재료(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당해 제품 공장도 가격의 50%이하인 경우 원산지 인정

30) 순원가법(Net Cost Method): 부가가치 계산방식으로 물품의 순원가에서 비원산지 재료비를 공제하여 계산

아지게 된다.

그리고 제품의 기준가격 관련, 한-칠레 FTA와 한-싱 FTA는 부가가치비율 산출에 필요한 본선인도가격(FOB)을 사용하는데 반하여, 한-EFTA는 공장도가격(Ex-work price)을 사용한다. 한편, 원재료를 수입하여 역내에서 추가가공을 거친 반제품을 사용하여 최종제품을 생산한 경우 부가가치비율 계산 시 이 반제품의 가격을 비원산지재료가격에 포함할지 여부가 문제된다. 역내 추가가공을 통하여 반제품이 역내산으로 원산지가 변경된 때에는 비원산지 재료가격에 포함할 필요가 전혀 없다. 반제품 그 자체가 원산지재료로 인정되기 때문에 반제품에 결합된 비원산지재료를 따로 분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sup>31)</sup>. 그러나 반제품의 원산지가 역내산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반제품의 처리방법과 관련하여 FTA 마다 상이한 기준이 적용된다. 한-칠레 FTA와 한-싱 FTA의 경우 기본적으로 반제품의 가격 전체를 비원산지재료가격에 포함한다. 다만, 추가가공 시 역내산 재료가 포함된 경우 역내산 재료가격은 공제될 수 있다.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인건비나 가공비용은 공제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한-EFTA에서는 이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다. 국산재료비도 공제될 수 없다고 보고, 반제품 가격 전부를 비원산지재료 가격에 포함여부를 검토해야 한다.<sup>32)</sup>

<표8> 부가가치기준의 기술적 세부사항 차이점

구 분	한-칠레 FTA	한-싱 FTA	한-EFTA
제품기준가격	FOB	FOB	Ex-work 가격
부가가치공식	공제법/직접법	공제법	MC 방식

31) rolling-up 방식(역내부가가치 계산시 어떤 부품을 만들기 위해 수입된 중간부품들이 부가가치기준에 의해 역내산으로 판정되면 해당 부품 전체의 가격이 역내산으로 판정받는 것)이라고 한다.

32) rolling-down 방식(역외산 재료를 수입하여 역내에서 가공하여 새 부품을 추가하고 중간부품을 만든 경우, 해당 중간부품이 역내산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투입된 역내산 부품까지 모두 역내산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한다.

부가가치 수준		45% (공제법)	45%~55% (공제법)	40~70% (공제법 환산지)
역내추가 가공품	원산지 인정	100% 인정	100% 인정	100% 인정
	원산지 불인정	국산재료비 공제	국산재료비 공제	-

출처: 정인교외(2005), “우리나라 FTA 원산지규정(ROO)연구 및 실증분석”.

#### (다) 제조가공 공정기준<sup>33)</sup>

##### ① 제조가공 공정기준의 의의

제조가공 공정기준(Specific Manufacturing or Processing Operation Criterion)은 각 제품에 대해 주요한 제조가공 공정을 제시하고 당해 공정이 수행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조가공 공정기준은 세번변경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과 함께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는 보조적인 기준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조합기준). 대부분 FTA에서 제조가공공정기준을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섬유나 의류제품, 밀가루 제품 등 특정 제품에 대한 품목별 기준에 자세히 나타나고 있다.

##### ② FTA별 주요공정기준

한-칠레 FTA의 경우 의류제품(제61류~제62류)에 한하여 당사국에서 자국산 원단을 사용하여 재단·봉제 공정을 거쳐 만든 의류제품에 대해 원산지를 인정하고 있다.

한-싱 FTA 및 한-EFTA의 경우 원산지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재단·봉제 공정을 거쳐 만든 의류제품에 대해 원산지를 인정하고 있다. 한-EFTA에서는 원단의 경

33) 성윤갑(2007), “FTA 원산지 해설” p151~152 참조

우 염색공정과 날염공정을 거친 것에 대해 원산지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수입 생지의 가격이 최종 제품 공장도가격의 50%이하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중국에서 생지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염색공정을 거친 원단을 스위스로 수출한다고 가정할 경우 수입한 생지의 가격이 최종 제품의 공장도가격을 기준으로 50%이하인 때에는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인정(認定)받게 된다.

<표9> FTA별 주요공정기준 적용물품 비교

품명	HS번호	한-칠레 FTA	한-싱 FTA	한-EFTA
의류제품	61~62류	CC+ 국산원단요건 + 재단·봉제요건	CC+ 재단·봉제요건	CC+ 재단·봉제요건
직 물	50~60류	CC	CC	CTH or 염색 또는 날염(단, 수입한 생지의 가격이 최종제품 가격의 50% 이하일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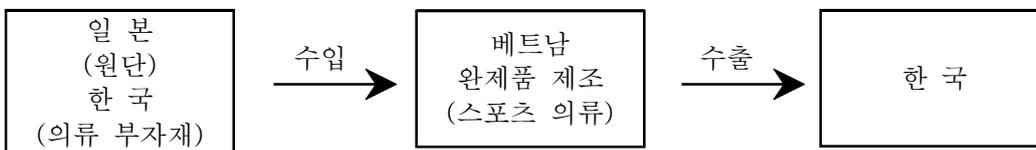
출처: 정인교외(2005), “우리나라 FTA 원산지규정(ROO)연구및 실증분석”.

[예시] 제조가공공정기준에 의한 결정사례

(i) 거래 개요

일본 원단과 국산 부자재를 베트남에 수출하여 재단·봉제를 거쳐 완제품인 『기능성 스포츠 의류』를 수입하는 경우에 원산지 결정을 검토한다.

(ii) 거래 흐름도



(iii) 원산지 결정기준

“가공공정기준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되고 특수공정을 수행한 것이어야 하며, 부가가치기준은 40%이상 역내부가가치 발생하여야 한다.”(한-아세안 FTA 협정)

(iv) 원산지 결정기준별 검토

“가공공정기준(CC+ SP, Specific process , Cut&Swing)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이다. 다만, 계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에 한 한다”(한-아세안FTA 협정)

\*부분품별 품목번호 및 원산지(출처: 인천세관 심사총괄과(2009), 부가가치기준사례)

연번	재료명	품목번호	원산지	금액 <sup>34)</sup>	구성비
1	의류원단	5903.90-0000	일본	847	67%
2	단추	9606.21-0000	국산	20	1.6%
3	실	5508.20-9000	국산	5	0.4%
4	라벨	5807.90-1000	국산	10	1%
5	재단·봉제	-	베트남	372	30%
완제품(스포츠의류)		6206.90-0000		1254	100%

먼저 가공공정기준 충족여부를 보면 완제품 세 번이 6206호로 세 번 변경기준을 충족하였고, 재단 및 봉제가 베트남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가공공정기준을 충족한다. 다음으로 부가가치기준을 검토한다.

한-아세안 FTA는 LC(Local Contents)법을 채택하되, 국가별로 한쪽을 고수하도록 하며, 상품가격기준은 본선인도가격(FOB)이고 한-아세안 FTA는 추가적인 가산·공제요소 없다. 그리고 “부가가치기준”은 공제법을 적용한다.

34) 해당 물품의 제조 설계표를 제출받아 투입되는 원재료별 소요량 확인을 거쳐 확인되는 금액

\* 원산지 및 비원산지 재료 및 구성비율(출처: 인천세관 심사총괄과(2009), 사례편)

연번	재료명	품목번호	원산지	금액	구성비
1	의류원단	5903.90-0000	일본	847	67%
2	단추	9606.21-0000	국산	20	1.6%
3	실	5508.20-9000	국산	5	0.4%
4	라벨	5807.90-1000	국산	10	1%
5	재단·봉제	-	베트남	372	30%
완제품(스포츠의류)		6206.90-0000		1254	100%

부가가치기준 충족여부는 부가가치비율이 40%미만이므로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계산: 공제법) \text{ 부가가치비율} = \frac{1254(\text{상품가격}) - 847(\text{비원산지재료})}{1254(\text{상품가격})} \times 100 = 32.5\%$$

(v) 원산지 국가 판정:

위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해당 세 번의 부가가치기준은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가공공정기준을 충족하였으므로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되어 원산지 국가는 베트남으로 판단된다.

### 3. 보충적 원산지결정기준<sup>35)</sup>

실질적 변형기준에서 언급하고 있는 세번변정기준, 부가가치기준 등이 지니고 있는 한계 또는 모순을 보완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FTA 원산지규정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보충적 원산지기준을 도입하고 있다. 대표적인 보충기준으로는 미소기준, 누적기준, 중간재규정, 대체가능재료, 간접재료 또는 중립요소, 부속품·포장재 관련 규정, 불인정 공정기준, 직접운송원칙 등이 사용된다.

35) 성윤갑(2007), "FTA 원산지 해설" p163~179 참조

(가) 미소기준(De minimis)

“허용가능 최소” 또는 “의무면제”의 뜻을 지니며,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의 경우 미미한 금액 또는 수량의 비원산지재료가 세번변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으로서 FTA별 미소기준의 차이점을 비교·분석한 내용은 아래<표10>와 같다.

<표10> FTA별 미소기준 차이점 비교

구 분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EFTA	한·아세안 FTA	한·미FTA
일반물품 (가격기준)	8% 미만 (FOB)	10% 미만 (FOB)	10% 미만 (Ex-works)	10% 미만 (FOB)	10% 미만 (조정가치)
섬유제품 (중량기준) (제50류~제63류)	8% 미만	8% 미만	10% 미만	10% 미만	7% 미만
농수산물	기초농산물 (제1류~제14류)	8%+ CTSH	적용제외	10%+ CTSH	일부 농수산물에 대하여는 미소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이를 부속서로 정리
	가공농산물 (제15류~제24류)	8%+ CTSH	10%+ CTSH	10%+ CTS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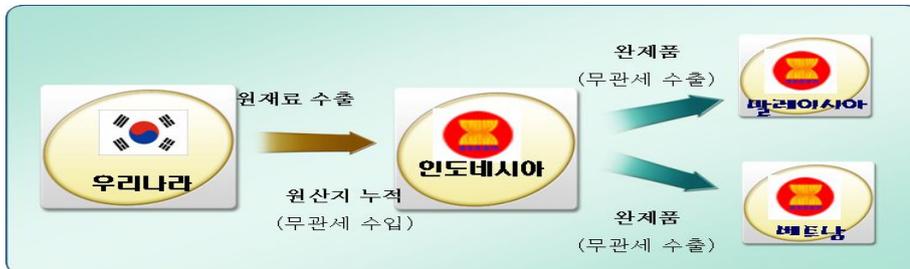
출처: 정인교외(2005), “우리나라 FTA 원산지규정(ROO)연구및 실증분석”.

(나) 누적기준

아래의 <그림>과 같이 물품의 최종 생산자가 국내산이 아닌 FTA 상대국산 원재료를 사용하여 물품을 생산한 경우 그 원재료를 국산재료(원산지 재료)로 간주(누

적)하여 특혜관세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FTA에 의한 경제통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함이다.

[예시] 누적 개념도



(다) 중간재 기준

중간재(Intermediate material) 의미는 상품의 생산자가 최종상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자체 생산한 재료를 뜻하며 역내가치 함유비율 산정의 목적상 상품 생산에 사용된 자체 생산 재료를 중간재로 지정 가능하다.

역내산 인정기준 방법은 두가지가 있다.

첫째, 롤업(Roll-up) 기준으로 비원산지 재료가 일정한 가공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경우 당해 재료가 최종 제품에 체화되면 동 재료는 100% 역내산으로 인정(認定)되는 기준이다.

둘째, 롤다운(Roll-down) 기준으로 역외산 재료를 수입하여 역내에서 가공하여 새 부품을 추가하고 중간 부품을 만든 경우, 해당 중간부품이 역내산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투입된 역내산 부품까지 모두 역내산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기준이다.

(라) 대체가능재료 규정

대체가능재료란 물품의 특성, 기능, 구조 등이 본질적으로 동일하여 상업적으로 대체사용이 가능한 물품 또는 재료를 말하는 것으로 곡물, 과일, 석탄 등의 산물과

볼트, 너트, 베어링, 타이어 등 범용성 부품이 해당된다.

원산지 물품과 비원산지 물품을 혼용하여 사용할 경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른 각 회사의 재고관리기법(개별법<sup>36</sup>), 선입선출법<sup>37</sup>, 후입선출법<sup>38</sup>, 평균법<sup>39</sup>)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되고 재고관리기법이 일단 결정되면, 그 기법은 그 회계 연도 동안 계속 사용된다.

#### (마) 간접재료 또는 중립요소

간접재료(Indirect Material) 또는 중립요소(Neutral Elements) 의미는 상품의 생산, 시험 또는 검사과정에 사용되지만, 그 상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않는 물품 또는 상품생산과 관련된 건물의 유지나 설비의 작동에 사용되는 물품이다. 주요한 간접재료의 종류는 ① 연료 및 에너지. ② 공구, 금형 및 다이스 ③ 설비와 건물의 유지에 사용되는 예비 부분품과 재료. ④ 물품의 생산 또는 설비와 건물의 가동에 사용되는 윤활유, 그리스, 혼합물과 기타 필요한 재료. ⑤ 장갑, 안경, 신발, 의류, 안전장비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소모품. ⑥ 촉매제와 용해제. ⑦ 그 밖의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물품 등이다.

#### (바)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

36) 역내산과 역외산을 혼용포장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를 구분하여 각 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것.

37) 먼저 입고한 재료가 먼저 출고된 것으로 보고 입고된 재료의 원산지 등을 기준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38) 가장 최근에 입고한 재료가 먼저 출고된 것으로 보고 입고된 재료의 원산지 등을 기준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39) 역내산과 역외산을 혼용 포장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해당 물품 생산 당시 보관중인 원산지 재료 및 비원산지 재료의 취득가격을 계산하여 취득가격이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것.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는 본 상품과 같은 송품장에 의하여 거래(인도)되고, 그 수량과 금액이 통상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표준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인 경우에는 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면 그 부속품 등을 모두 원산지 물품으로 간주(看做)한다.

(사) 소매판매용 포장재료 및 용기

세번변경기준 적용에는 포장용구가 내용물과 같은 세번에 분류되는 경우 내용물의 원산지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하고, 다만, HS 품목분류체계상 포장용품과 내용품을 각각 별개의 품목번호로 분류하고 있는 때에는 제외하도록 규정한다. 계속 반복 사용이 가능한 가스통·컨테이너 기타 특수 제작한 금속용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부가가치기준 적용 시에는 각각의 원산지에 따라 부가가치 계산 후, 내용물품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되면 포장재료 등도 원산지 물품으로 간주한다.

(아) 운송용 포장의 취급

대부분 FTA에서 운송을 위한 포장 재료와 포장류는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 적용시 모두 무시하고 원산지를 결정하도록 하는 규정(規定)이다.

(자) 불인정 공정 기준(Non-qualifying Operation)

역내산 원산지를 부여하기에 불충분하다고 간주되는 경미한 공정(실질적 변형시킴)에 충분한 정도의 공정이 아님이다. 비록 세번변경이나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한 경우라 하더라도 역내에서 수행된 공정이 단지 운송 또는 보존을 위해 필요한 작업이거나 판매를 위한 포장, 전시를 위한 단순한 작업에 불과한 경우 역내산으

로 불인정하는 제도로서 이는 우회수입 또는 관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FTA에서는 이와 같은 경미한 가공작업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에서도 동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아래의 <표11> 참조)

<표11> FTA별 불인정공정의 유형 비교

한-칠레 FTA	한-싱 FTA	한-EFTA
* 운송·저장 보존 공정	* 운송·저장 보존 공정	* 운송·저장 보존 공정
* 선적·운송 촉진 공정	* 시험·측정·품질 조사	* 시험·측정
* 판매용 포장·전시 공정	* 단순 포장공정 (병입 등)	* 단순 포장공정(병입 등)
* 포장변경·해체·재포장	* 포장변경·해체·재포장	* 포장변경·해체·재포장(없음)
* 건조·냉동·냉장	* 건조·냉동·염장	* 혼합·절단·분류·세척
* 혼합·절단·분류·세척	* 혼합·절단·연마	* 탈피·분쇄·뼈제거 등
* 탈피·분쇄·뼈제거 등	* 탈피·분쇄·뼈제거 등	* 재료도포·먼지제거
* 재료도포·먼지제거	* 재료도포·먼지제거	* 희석
* 희석·염화·가당	* 희석	* 단순조립·분해
* 단순조립·세트·분해	* 단순조립·분해	* 동물의 도축
* 동물의 도축	* 동물의 도축	* 식물 다림질
		* 곡물의 껍질제거·광택
		* 설탕컬러링·럼프화

출처: 한국관세무역개발원 FTA 포탈(2009).

특히, 농수산물의 경우 건조, 냉동, 분쇄, 혼합, 도축 등의 경미한 가공만 한 경우에도 HS 2단위 또는 4단위의 품목번호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산품의 경우에 소매포장 또는 단순조립만 하여 품목번호(HS 번호)가 변경되어도 역내산으로 불인정한다. 이와 같은 사례를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

[예시] 불인정공정으로 인한 HS번호 변경 사례(출처:한국관세무역개발원 FTA 포탈)

투입원료	HS 번호	생산공정	생산제품	HS 번호
멸치	0301	건조	마른 멸치	0305
쌀	1006	제분	쌀가루	1102
화강암	2516	분쇄	자갈	2517
석회석	2521	분쇄·열처리	시멘트	2523
페니실린	3003	포장	소매용 페니실린	3004
원목	4403	절단	제재목	4407
안경테,안경렌즈	9003, 9001	조립	안경	9004

(차) 역외가공 인정

원칙은 생산 과정 중 일부 공정이 역외에서 이루어 질 경우, 역외가공에서 사용된 모든 역내재료의 부가가치를 비역내산으로 산정(算定)한다.

자유무역협정에서 역외가공을 인정하는 경우 역외가공에 사용된 역내재료의 부가가치를 최종 생산품의 역내 부가가치 계산에 누적함으로써 부가가치 기준에 대한 요건을 완화(緩和)한다고 볼 수 있다.

(카) 세트 물품

세트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부품이 원산지 재료일 때 동 세트 역시 역내산으로 간주하나 그 세트가 역내산과 역외산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역외산 부품이 동 세트의 공장도 가격의 15%가 넘지 않을 경우 역내산으로 간주(看做)한다.

4. 직접운송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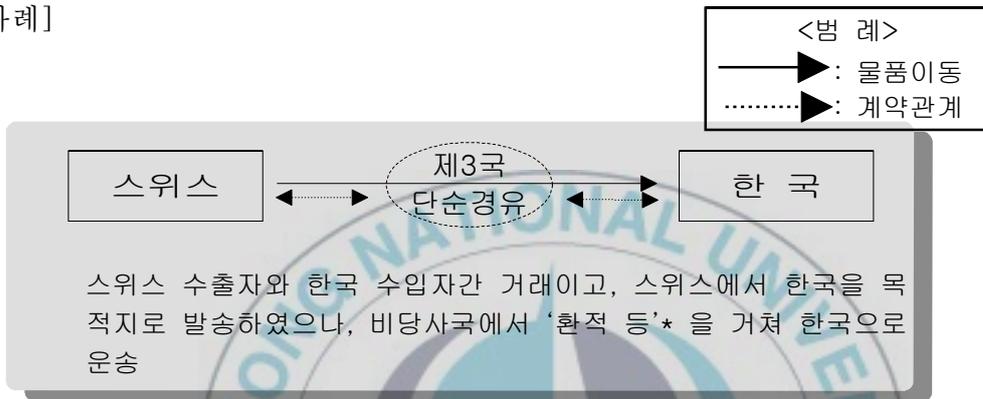
다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 원산지물품(Originating goods)이라 하더라도 협정 상대국으로부터 직접 운송된 물품에 한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는 원칙이며 계약상대국이 아닌 국가를 경유하여 운송되거나 선적된 경우 또는 추가가공이 되었

고, 제3국으로 수출된 후 수입된 물품 등은 원산지를 불인정한다.(아래 <그림>의 적용사례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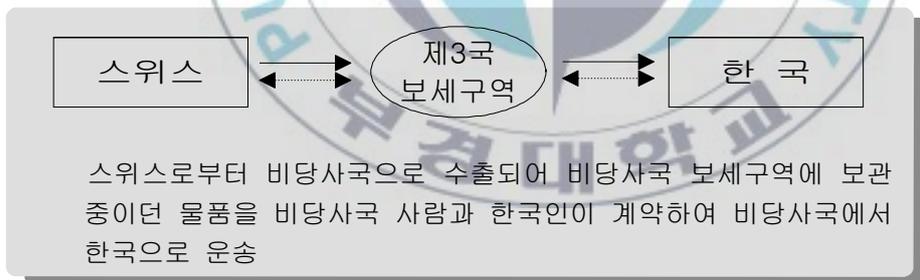
다만, 협정에서 달리 定하거나 당해 물품이 계약상대국이 아닌 국가의 보세구역에서 운송 상의 목적으로 환적 되었거나 일시적으로 장치되었음이 인정되는 때에는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FTA 관세특례법 제9조2항)

[예시] 직접운송요건 적용사례

[충족사례]



[불충족 사례]



### 제3장 FTA 원산지규정의 위반사례 분석과 활용 방안

#### 제1절 FTA 원산지규정의 비용과 위반사례 분석

##### 1. 원산지규정의 비용

FTA 원산지규정은 그 엄격성과 복잡성으로 인해 생산 및 행정비용이라는 두 가지 부정적 비용을 유발하는데 우선, 생산비용은 원산지규정의 기준에 의해 부여되는 다양한 기술적인 기준 때문에 늘어날 수 있다. FTA 협정내에 엄격한 원산지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FTA 체결국 내의 최종제품 생산자에 대해 원산지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한 고가 역내물품 투입 비중을 높게 하며 이로 인해 투입원자재 비용의 상승을 유발시킴으로써 회원국간 교역을 증대시키는 FTA의 잠재성이 약화될 수 밖에 없다.

둘째, 행정비용은 원산지규정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입증하는데 요구되는 행정절차로부터 기인한다. 이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단계인 증명단계와 FTA 규정에 따라 사후 물품의 원산지가 적정한지 여부를 판정하는 검증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FTA가 확대됨에 따라 이들 절차가 제각각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규정적용의 복잡성과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Dorothea, C. Lazaro and Erlinda M. Medalla, 2006). 행정비용은 FTA 협정국으로 수출하기 전에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기 위해 수출업자들에게 부과되는 비용인 부기비용(bookkeeping cost)과 상대국 세관당국의 수입품의 원산지 검증비용으로 구성된다.

결국 상이한 원산지증명제도는 기업과 정부에게 서로 다른 비용을 부과시키며, 특히 다수의 FTA에 개별적인 원산지기준을 규정하여 가입한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 Koskinen(1983)은 EC-EFTA FTA하에서 최종 수출업자에게 부과되는 행정

비용이 수출거래 가격의 1.4%에서 5.7%라고 측정하였으며, Cadot, et al(2002)은 NAFTA의 원산지관련 행정비용이 미국 시장에 수출하는 멕시코 수출금액의 약2%인 것으로 밝혔다. 또한 부가가치기준에 기초한 원산지규정이 적용되는 생산업자들은 환율변동 및 생산비용의 변화로 인해 추가적인 행정적 복잡성에 직면하고 있다(안재진, 2008).

## 2. FTA 원산지규정의 위반사례 분석

FTA 협정에서는 원산지에 관한 입증책임이 업체에게 있다. 원산지 사후검증 기간내 관련 업체가 원산지 검증에 非협조이거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 FTA 협정에 따라 해당 물품은 非원산지로 처리된다. 현재까지 발효된 FTA에서는 원산지 사후검증과 관련되어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후검증 기간이 수출 후 5년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 기업들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해를 돕기 위해 자주 발생하는 국내·외의 원산지결정기준 관련 위반 사례를 조사하여 아래와 같이 위험내용을 분석한다.

### (가) FTA 특혜세율 적용 오류사례

- ① 거래내용: A수입업체는 '07.6~'08.4까지 베트남으로부터 1.05억원 상당의 초밥용 익힌 새우를 스티로폴 접시에 담아 랩으로 포장하여 수입하면서 협정관세 0%를 적용 신청했다.
- ② 위험내용: 조제새우는 밀폐용기에 포장한 경우에 한하여 협정관세 적용대상이 되나, 당해 스티로폴 포장은 밀폐용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판정결과: 일반세율(20%)에 해당하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 2천4백만원 추정 조치하여 FTA 협정 위반한 사례이다.

(나) 원산지증명 요건 위반사례

① 거래내용: 수입업체 B주식회사는 '04년 5월~'04년 8월 칠레로부터 아크릴섬유 제조용 촉매(몰리브덴산염) 3.7억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협정관세율 0% 적용 신청했다.

② 위험내용: 원산지증명서는 수출국에 소재하는 수출자가 발급하여야 하나, 일본의 중개인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것은 FTA 협정을 위반하였다.

③ 판정결과: 협정관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일반세율(5.5%)에 해당하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 2천6백만원 추정 조치한다.

(다) 원산지 입증자료 미제출 사례

① 거래내용: 수입업체 C주식회사는 스위스로부터 금괴 950kg을 7차례에 걸쳐 수입 하면서 스위스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 증명서에 근거하여 협정관세 0% 적용 신청했다.

② 위험내용: 대구세관, 서울세관에서 스위스 세관당국에 원산지 검증 요청하였으나, 스위스 세관당국은 수출자가 원산지증빙서류(금괴 생산에 투입된 원산지별 재료 내역등)를 제출하지 않아 자국 수출자가 협정을 위반하였음을 회신되어 당해 수입물품은 FTA 협정 대상물품이 아니다

③ 판정결과: 일반세율(3%)을 적용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 7억7천만원 추정 조치한다.

(라) 원산지기준 위반사례

① 거래내용: 수입자는 중국의 OO유한공사와 계약하고 북한의 OO무역회사를 통해 조미오징어를 수입하면서 '06.11~'08.8까지 총23건(1,927천불)에 대해 북한산 특혜관세 적용을 신청했다.

② 위험내용: 수입자가 수입한 조미오징어는 중국에서 물다루마를 자숙한 상태로 북한에 반입하여 건조, 세절, 조미 포장작업을 거쳐 우리나라에 수입한 물품으로 북한에 반입 당시 물품의 HS 1605.90-9090호와 북한에서 가공거쳐 우리나라에 수입된 물품의 HS 1605.90-9010호로서 실질적 변형기준인 HS 6단위가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북한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

③ 판정결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관세율 0%를 20%로 경정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 498백만원 추징 조치한다.

(마) 원산지 결정기준 위반사례

① 거래내용: 외국에서 저순도 금괴를 수입하여 자국에서 고순도로 정련하여 수출한 거래이다.

② 위험내용: 저순도 금괴의 품목번호와 고순도 금괴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므로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 변형조건 불충족에 해당된다. (한-EFTA)

③ 판정결과: 세번(품목번호)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실질적 변형조건 불충족되어 비원산국으로 판정한다.

(바) 원산지증명서 발행기관 위반사례

① 위험내용: 싱가포르 세관에서 발행된 원산지증명서를 사용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여야 하나 싱가포르 상공회의소에서 발행된 원산지증명서 사용하였다.  
(한-싱가포르 FTA)

② 위험내용: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증명서 발행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로 협정세율적용 신청하는 경우이다.(공통)

(사) 원산지증명서 서식 오류사례

① 위험내용: 한-아세안 FTA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증명서 서식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원산지증명서 서식 사용한 경우이다.  
(한-아세안 FTA)

② 위험내용: 한-싱가포르 FTA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고 한-아세안 FTA 협정 관세를 적용 받았으나 해당 FTA 협정의 원산지증명서 서식 사용하지 않아 원산지 규정 위반으로 특혜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한-아세안 FTA)

(아) 원산지증명서 작성자 오류사례

① 위험내용: 원산지증명서는 수출국에 소재하고 수출물품을 생산, 제조 및 수출한자가 발행하여야 하나, 제3국 중계인 발행한 원산지신고서로 협정관세 적용 신청하였으나 원산지증명서 작성자 위반으로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한-EFTA)

② 위험내용: 원산지증명서는 수출국에 소재하고 있는 수출자가 협정 상대 수입국에 소재하고 있는 수입자를 당사자로 하여 발행된 경우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되나, 칠레 수출자가 일본 중계인을 대상으로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로 우리나라에서 협정관세적용 신청하였으나 원산지증명서 작성자 위반으로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한-칠레 FTA)

(자) 직접운송 요건 불충족 사례

① 위험내용: 제3국을 경유하여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은 세관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3국을 단순경유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서 제3국에 머무르는 동안 제3국의 관세당국 통제 하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제3국의 물류창고에서 분류/환적 되었음에도 제3국의 세관 통제 하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없다.

(한-칠레 FTA, 한-아세안 FTA)

(차) 국외사례 (1)

① 거래내용: 수출국에서의 단순가공한 경우에는 원산지기준 미충족에 해당된다.

② 위험내용: 미국에 소재한 Pioneer사는 제3국 부품을 사용하여 멕시코 에서 단순 조립된 스피커를 수입하면서 NAFTA 특혜관세 적용을 신청하였으나 실질적 변형한 가공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이다.

③ 판정결과: 미국세관은 원산지기준 미충족으로 판단하여 Pioneer사를 처벌했다. 허위신청에 대한 중과실죄 적용하여 21백만불(약210억원)벌금 부과하고

입증자료 보관의무 위반으로 16백만불(약160억원) 벌금 부과했다.

(카) 국외사례(2)

① 거래내용: 1996년 Ford차 회사는 멕시코 소재 자회사로부터 자동차 부품 수입하면서 Ford차 회사는 원산지증명서를 미국세관에 제출하고 특혜관세 적용을 신청한 경우이다.

② 위험내용: 2001년 미국세관은 Ford차 회사가 기제출한 원산지증명서 를 입증하는 모든 서류, 서류작성 장소 및 작성자에 관한 정보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Ford차는 해외 수출자가 유지하는 기록이라며 제출을 거부하였다.

③ 판정결과: 미국세관은 FTA협정 위반으로 41백만불(약410억원)벌금 부과하여 Ford차 회사가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미국 법원에서 청구 기각되어 Ford차 회사가 패소한 사례이다.

### 3. 스파게티 볼 효과의 문제

스파게티 볼이라고 지칭되는 협정의 모순은 지속적인 FTA 체결이 협정내용의 깊이, 범위, 한계로 인해 그 국가의 무역과 관련된 규정제정의 중복성을 발생시킨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FTA 협정들간 차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의도하지 않은 생산의 비효율성, 다양한 지역에서의 적용 및 통제에 따른 어려움 또는 혼란으로 인해 결국 무역원활화의 목표가 손상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원산지문제에 대한 협정에서의 중복은 국내 정부당국과 기업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특히 정부 및 민간 부문의 운영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표12> 자유무역협정 내용의 일반적 특성

특 성	내 용	
근거법의 다양성	7개 협정, 19개 국내법(법5, 영5, 규칙3, 고시6)	
법규의 복잡성	세 율	한 품목 다세율
	원산지결정기준	한 품목 다기준(복수의 원산지)
	원산지증명 / 특혜신청	협정별 내용, 절차 상이
	원산지검증	협정별 검증 주제, 방법, 기간상이
	FTA효과: 무역장벽(관세율)↓, 원산지검증절차↑ ⇒“Spaghetti Bowl 효과”	
역량요소의 종합성	부가가치기준의 적용	관세평가 및 회계지식
	세번변경기준의 적용	생산공정 + 품목분류지식
	운송요건 적용	국제거래 + 물류체계지식
국제성	해외수출자/생산자 방문조사(직접조사) 외국세관 경유조사(간접조사)	
수출물품 원산지관리 중요성	외국세관의 검증 요청 증가	

출처: 김동수(2009), FTA 원산지 심사 및 사례자료.

위의 <표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FTA 체결이 증가함에 따라 근거법의 다양성, 법규의 복잡성 등으로 원산지규정을 충족하는 것이 큰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FTA 원산지규정의 스파게티 볼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역량요소의 종합성에 해당되는 원산지판정 기준에는 다양한 기준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각 물품별-FTA별로 이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적용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그리고 수많은 관세철폐, 원산지 요구사항의 관리 및 적용, 증명 및 검증 시스템으로 인한 업무의 복잡성 증대 등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한 업무는 원산지관련 세관절차를 포함하는 FTA 협정 간 차이에 의해서 더욱 어려워지며, 더욱 수준 높은 훈련, 관련 업무에 대한 정보 및 자원을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물품 생산자는 상이한 FTA의 관세혜택을 동시에 가장 크게 하기 위해서 각 FTA별로 서로 다른 원산지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하며, 유연한 생산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제조업자는 첫째, 추가적인 회계기준 마련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역내부가가치 계산방법의 차이, 최종제품과 투입물품의 목록관리, 기타 수출업자들에 대한 원산지통보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생산 공정을 FTA별로 차별화시켜야 한다. 즉, 모든 생산 공정이 상이한 원산지 규정 하에서 승인되지 않으며, 주요 투입 원자재 및 물품의 원산지가 FTA에 따라서 구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여러 국가에서 원자재 등을 수입할 경우 다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와 같은 다양성 충족은 기술적으로 실행가능성이 낮을 수도 있으며, 때때로 불충분한 대체재를 이용하도록 하고,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게 하거나 또는 품질 표준화의 방해가 될 수도 있다 (Mortimore Michael, 2006).

넷째, 가장 큰 어려움을 초래하고 영향을 주는 것은 생산자에게 오직 각 FTA 협정에서의 원산지 누적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Rafael Comejo-Jeremy Harris, 2007) 이는 하나의 FTA하에서 원산지물품으로써 수입된 투입재가 다른 FTA에서는 원산지물품으로 고려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한 부분적인 누적기준의 적용은 일국의 FTA에 대한 전체적인 잠재 영향을 제한하게 되며, 무역갈절을 유발하게 된다(안재진, 2008). 이와 같은 스파게티 볼 효과로 인한 어려움의 대표적인 예인 EU의 사례와 같이 원산지정보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우리 수출기업에게는 큰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으며, 원산지규정 미충족 등으로 인해 FTA 혜택을 향유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경쟁력 및 신뢰도마저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경우에도 FTA 체결이 급증하고 있는 시점에서 기존에 체결된 개별 FTA의 원산지규정을 통일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이를 효율적으로 원산지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적절한 관리방안을 모색(摸索)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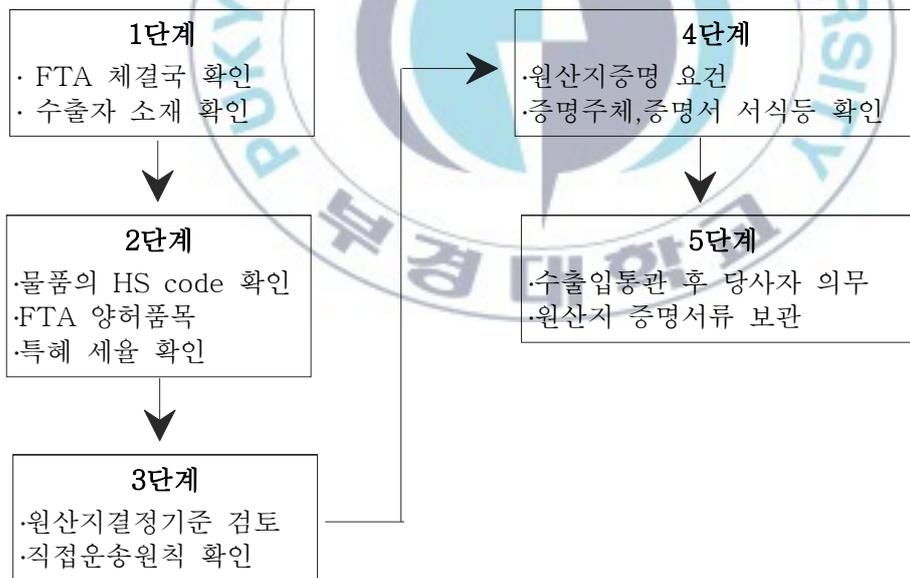
## 제2절 원산지규정 핵심요소 활용 방안

위의 FTA 원산지규정 위반사례를 분석하면 원산지결정기준에서 자주 발생하는 유형은 FTA 특혜세율 적용 오류 및 원산지증명 요건 위반으로서 발급자(해당국가 수출자), 발행기관, 서식오류 등이 있으며, 원산지결정기준 위반과 원산지 입증자료 미제출로 인하여 FTA 협정을 위반(違反)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원산지규정에서 위반하는 핵심요소를 가지고 국민과 기업에게 최적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FTA 원산지결정기준으로 매뉴얼을 구성하여 FTA 원산지규정에 관련된 정보로 제시한다.

아래의 <그림2>의 「FTA 원산지 업무체계도」는 우리나라의 기업이 FTA 체결 상대국가와 무역 거래 시 FTA 원산지결정기준 활용을 위한 매뉴얼을 5단계로 구성했다.

<그림2> FTA 원산지 업무 체계도



[1단계] 수출입 상대국에 대한 FTA 체결국가를 확인한다.

① 현재 우리나라의 FTA 체결국이 어디인지 먼저 알아야 한다.

\* 한-칠레 FTA(2004년 4월 1일 발효), 한-싱가폴 FTA(2006년 3월 2일 발효)

\* 한-EFTA FTA(2006년 9월 1일 발효):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유럽4개국으로 구성된 자유무역연합체

\* 한-ASEAN FTA(2007년 6월 1일 발효):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10개국으로 구성된 동남아시아국가연합

② 수출입자가 FTA 체결국에 소재하는지 확인한다.

이와 관련하여 수출자 소재 확인이 필요하며, FTA상 수출자는 상품이 수출되는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면서 그 상품을 수출하는 인(자연인·법인)을 말한다.

그리고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의 주체로서, 자료보관의무를 부담하고 원산지검증대상이 되므로 제3국에 소재하는 인(人)은 수출자가 될 수 없다.

또한 제3국에 소재하는 인(人)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

다음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체크하는 포인트는 수출자가 계약당사국 국민 또는 기업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수출자 책임 하에 실제로 상품을 선적하여 우리나라의 국민 또는 기업으로서 수입관련 자료 보관의무를 지는 자 앞으로 발송하였는지가 중요한 요소이다.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원산지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계약당사국 영역 내에 보관할 의무를 지는 자여야 한다.

[2단계] 무역거래품목이 협정대상 품목에 해당되는지 확인한다.

아래<표13>의 협정별 양허계획에 의하여 특혜관세는 각 협정에서 정하는 특정한 품목에 한하여 적용되고, 한 품목에 적용되는 세율도 협정별, 국가별, 연도별 다르다.(김동수(2009), FTA 원산지 심사 및 사례, pp28.)

<표13> FTA 협정별 양허계획

협정	양허계획
한·칠레 FTA	양허 품목수를 기준으로 총11,170개 품목 중 87.2%인 9,740개는 발효와 동시 철폐. 기타 품목은 5~16년에 걸쳐 단계적 철폐
한·싱가포르 FTA	양허품목수를 기준으로 총11,261개 품목중 59.7%인 6,724개는 발효와 동시 철폐. 기타 품목은 5~10년에 걸쳐 단계적 철폐
한-EFTA FTA	양허 대상품목은 기초농산물을 제외한 총 10,114개 품목중 86.3%인 8,726개는 발효와 동시 철폐. 기타 품목은 3~10년에 걸쳐 단계적 철폐
한-아세안 FTA	일반품목군과 민감품목군(일반민감품목+ 초민감품목) 총 11,261개 품목 중 64.9%인 7,312개는 발효와 동시 철폐

그러므로 특혜관세를 적용하여 절세를 하기 위하여 우선 수입하는 물품의 HS code에 따라 협정대상 품목(FTA양허 품목)인지, 대상품목이라면 특혜세율이 몇%인지 및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확인요령은 관세청 FTA포탈(<http://fta.customs.go.kr/>)에 접속하여 양허되는 품목 및 양허세율을 알수 있다.

<예시> 생아마 물품(HSK5301.10-0000)에 대한 한-아세안FTA 협정세율을 확인한 사례가 아래와 같다.

먼저 관세청 ⇒ 관세청 FTA포탈 접속 ⇒ “FTA 협정세율 및 원산지기준 검색”클릭 ⇒ “수입”, “아세안”클릭하면 생아마의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은 0%로 확인된다. (수출시 협정세율은 “수출”클릭하여 확인한다.)

[3단계] 원산지결정 기준은 무엇인지 검토한다.

협정세율을 확인한 후 해당품목의 원산지기준과 직접운송원칙을 확인하여야 한다. 확인하는 요령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①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요령

먼저 관세청 FTA포탈에 접속하여 협정상 원산지기준 확인하며, 다음으로 원산지증명서상 원산지기준 부호와 일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원산지결정 기준은 특정물품의 원산지 자격을 부여하는 기준이다.

요약하면 일반적기준으로 완전생산기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이 있으며, 보충적기준으로 불인정공정기준, 원산지인정 최소기준 등이 있다.

참고로 FTA 무역체제에서 원산지결정이 중요한 이유는 FTA가 본질적으로 FTA 체결국에만 관세혜택을 주는 兩당사국간 협정이기 때문이다.

한-미 FTA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멕시코에서 생산된 자동차부품이 미국산으로 둔갑하여 우리나라로 특혜관세 혜택을 받고 수입시 FTA 혜택이 우리나라와 미국이 아닌 멕시코 자동차부품회사로 돌아가게 된다.

③ 직접운송원칙 확인해야 한다.

원산지물품의 경우에도 계약상대국이 아닌 국가를 경유하여 운송되거나 선적된 경우에 계약상대국을 그 물품의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동일성 여부 등이 수입국에 의해 확인되지 않으므로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규정이다.

만약,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의 확인 요령은 아래와 같다.

첫째, 단순환적 또는 일시장치의 경우 1차적으로 운송회사가 발행한 운송서류

(B/L, 화물운송장 등)에 의해 최초 출항지와 최종 목적국(한국)이 계약 상대국으로 확인되면 인정할 수 있다

둘째, 운송서류의 적출국이 계약당사국이 아닌 경우 일차적으로 컨테이너 봉인 번호 등 계약상대국으로부터 운송된 물품과 동일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직접운송 요건 충족으로 인정할 수 있다.

셋째, 위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단순경유를 입증할 수 있는 공적인 입증서류(예: 경유국 세관당국이 발행한 보세구역 반출입 신고서류 또는 보관증, 단순경유 원산지증명서 등)를 추가로 징구하여 확인해야 한다.

※ 단, 계약상대국이 내륙지국가(예: 스위스연방)로서 ①선하증권 또는 화물운송장상의 수출자가 원산지증빙서류상의 수출자로 기재되어 있고, ②적출항이 계약상대국의 인접국가 항구 또는 공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③도착항이 우리나라의 항구 또는 공항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정할 수 있다.

[4단계] 원산지증명 요건을 확인한다.

① 원산지 증명 방식에는 아래<표14>에서와 같이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하는 기관발급방식과 수출자 자율적으로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하는 자율발급방식이 있다.(김동수(2009), FTA 원산지 심사 및 사례, pp34.)

<표14> FTA별 원산지 증명 방식

구분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한·아세안	한·미국
증명방식	자율증명	기관증명	자율증명	기관증명	자율증명
증명주체	수출자	싱가포르:세관 한국:세관,상공회의소	수출자	아세안:각주참고 한국:세관,상공회의소.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증명서 서식	양국간 통일증명서식	양국간 각자 증명서식	송품장 신고방식	통일증명방식 (AK서식)	서식 없음

유효기간	2년	1년	1년	6개월	4년
사용언어	영어 사용원칙				수입 당사국의 언어가 원칙
사용회수	1회 사용원칙(분할가능)※한·미의 경우 증명일로부터 12월이내 포괄증명 가능				

② 특혜관세 적용 신청 시 FTA별 협정에서 규정한 발행기관에서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래<표15> 참조)

<표15> FTA별 원산지증명서 발행기관

FTA별	국 가	발행기관	유 형
한·칠레	칠레	수출자	자율발급
한·싱가폴	싱가포르	세관	기관발급
한·EFTA	4개국	수출자	자율발급
한·아세안	브루나이	외교통상부	기관발급
	캄보디아	상무부	기관발급
	인도네시아	통상부	기관발급
	라오스	상무부	기관발급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기관발급
	미얀마	상무부	기관발급
	필리핀	세관	기관발급
	싱가포르	세관	기관발급
	베트남	통상부	기관발급

출처: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한·아세안 FTA 협정.

③ 원산지증명서 양식은 협정별로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협정은 일정한 양식(FORM)을 사용하므로 협정상 규정된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아래 <표16> 참조)

<표16> FTA별 원산지증명서 양식

FTA별	국 가	양 식
한·칠레	칠레	KOREA-CHILE FREE TRADE AGREEMENT CERTIFICATE OF ORIGIN
한·싱가폴	싱가포르	KOREA-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PREFERENTIAL CERTIFICATE OF ORIGIN
한·EFTA	스위스 등	원산지신고서 문안 <sup>40)</sup>
한·아세안	베트남 등	ASEAN-KOREA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CERTIFICATE OF ORIGIN(FORM AK)

출처: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아세안 FTA, 한·EFTA 법령.

④ 원산지증명서상 인장은 FTA포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시> 관세청 홈페이지 FTA포탈 공지사항에 접속하여 찾고자 하는 국가별 “인장 및 서명자료” 클릭하여 원산지증명서상 인장과 FTA포탈상 인장을 비교하여 확인할 수 있다.

[5단계] 마지막으로 수출입통관 후의 당사자들 의무내용

① 관세사무소 등 통관대행업체를 통해 수입통관을 진행하며, 이때 관세사에게 한번 더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혹시 회사자체에서 자가 통관을 할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등 자체적으로 면밀히 검토 후 수입통관을 진행해야 한다.

②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정확성은 사후에 검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사후 검증을 위해 자료 보관 의무를 두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협정관세

40) 송장 등 상업서류에 신고서 문안이 수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기록·확인되는 것 이어야 한다(한·EFTA 원산지규정 제15조)

적용을 배제하고, 형사처벌을 병행하도록 아래<표17>에서와 같이 FTA별 협정 관련 규정이 있다.(김동수(2009), pp37.)

그러므로 수입자는 사후 원산지 검증 등의 이유로 원산지증명서 사본, 수입신고필증, 계약서, 지재권거래 관련 계약서, 과세가격결정 관련 자료, 국제운송 관련 서류 등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참고: 수출자, 생산자도 원산지증명서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표17> FTA별 협정 관련규정

FTA별	관련규정
한·칠레	· 협정문 제5장 제5.3조, 제5.4조 · 한-칠레 FTA관세특례법 제12조(서류보관의무), 제13조(서류등 제출요구) 제17조(협정관세제한), 제19조 내지 제21조(처벌규정)
한·싱가포르 한·EFTA 한·아세안	· 한-싱 협정문 제5장 제5.5조 · 한-EFTA 협정문 부속서 제21조 · 한-아세안 협정문 부속서3부록1 제13조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자료보관 및 제출), 제16조(협정관세제한), 제22조 내지 제24조(처벌규정)
한·미국	· 한-미 협정문 제6장 제6.17조

## 제4장 FTA 원산지정보의 효율적 관리방안

### 제1절 정부측면에서의 관리체계 효율화 방안

#### 1. 원산지정보관리 전담기관 설립 및 통합관리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FTA는 원산지규정의 복잡성을 증대시키고 있는데, 이

는 앞에서 예시한 사례와 같이 FTA간 원산지규정의 올바른 적용에 어려움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국내제도 및 기존에 체결한 다양한 양자간·다자간 협정과 중복문제를 유발한다.<sup>41)</sup>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FTA 협정별로 원산지 결정기준, 협정관세 적용물품 및 연도별 세율, 원산지 검증 및 확인에 관한 사항 등 제도 및 절차가 상이하고 복잡함에 따른 스파게티 볼 효과를 초래하며, 이는 결국 무역자유화에 따른 FTA 효과를 반감시키는 반면 오히려 이를 운용하기 위해 추가적인 경제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 따라서 여러 기관에 산재해 있던 원산지관련 업무를 하나로 통합하여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전담기관인 한국원산지정보원을 이용하도록 적극적 홍보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같은 원산지정보관리 전담기관의 업무분야는 ① 원산지정보 조사/분석/평가, ② 원산지정보관리시스템 구축, ③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서비스, ④ 기업자율준수 프로그램 지원, ⑤ 원산지정보 고객센터 및 컨설팅 등의 업무를 예시하면 아래<표18>와 같다.(안재진, 2008.)

그러나 정책지원 이외에 기업의 요구사항을 실무측면에서 지원하는 데는 비용 및 시간 등 행정력의 부족으로 한계를 보일 수 있다.

다만,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공감대형성, 운영방안 제정, 예산의 편성 등 세부사항에 대한 운영규정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전담기관<sup>42)</sup> 설립 및 원산지정보시스템의 구축이 중요한 이유는 기존에 체결한 FTA 뿐만 아니라 이미 타결된 한·미 FTA와 막바지 협상중인 한·EU FTA의 영향 때문이다. 미국 및 EU의 경우 특히 자동차, 섬유, 의류 산업의 경쟁력이 클 뿐만 아니라 국내산업 보호 장벽을 높게 운영하고 있다. 만일 미국 및 EU 회원국들이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 FTA

41) 현재 원산지규정 관련 법체계는 관세법령, 대외무역법령, 한·칠레 FTA이행 관세특례법령, FTA 이행 관세특례법령, FTA 이행고시, 최빈국특혜관세규정, 원산지제도 운영고시, 남북교역원산지고시, 수출물품원산지증명서발급규정 등 매우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다.

42) 한국원산지정보원 설립(09.2.12): 수요자 입장의 민간위탁 전문기관, 한국관세사회 부설기관으로 발족(관세법 제233조의 2 및 관세법시행령 제236조의 5).

원산지규정을 토대로 원산지의 확인 및 검증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시의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기업은 물론이고 전체 산업에 대한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부분 이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원산지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은 물론이고 원산지정보 관련 DB 구축, 증빙서류 준비 등 기업측면(특히 중소기업)에서의 대비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 및 유관기관에서는 우리 수출기업의 대외 신뢰도 제고 및 경쟁력 극대화를 위해서는 FTA별로 철저하게 관리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표18> 원산지정보관리 전담기관의 업무 예시

업무분야	주요 업무 내용
① 원산지정보 조사/분석/평가	
원산지정보 조사	* 생산정보(생산공정): 생산능력, 제조공정, 납품기업 명단 등 * 거래형태: 원자재, 중간재 등의 입수루트 분석 등 * 부가가치계산: 생산관행, 품목별 부가가치 구성내역 조사
원산지정보 분석	* 품목별, 산업별 원산지결정 기준 분석 * 생산공정, 거래형태, 부가가치 비율 등 원산지결정기준 실행정보 구축
원산지정보 평가	* 물품의 원산지규정 충족여부 사전판정 여부 평가 * FTA별 원산지규정 충족여부 전문적 평가
② 원산지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정보시스템 구축	* 원산지정보시스템 구축 및 기업 조회서비스 제공 * 품목별 원산지정보, 심사 및 검증사례 정보 등 DB화 * FTA를 포함한 해외의 원산지 정보 DB 구축
원산지정보 서비스	* 품목별-산업별-FTA별로 원산지 충족여부 조회 서비스 제공 * 국내 미생산물품, 우회수출 가능 물품, 수출급증 물품 등 모니터링
③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서비스	
C/O 자율발급	* 원산지 자율발급 서식 및 업무 지원(관리대장, 원산지통보서 등) * 입증소명자료 전산DB 구축(기업시스템과도 연계)
C/O 정보관리	* 확인 및 검증을 위해 자율발급 e-C/O 보관서비스 제공 * 공인 전자무역문서보관소 연계를 통해 C/O 보안/인증관리
④ 기업자율준수 프로그램 지원	

공장등록	* 생산공장보유업체 지정제도(기관발급제) 사전조사 및 정보 DB화. * 등록기업 사후관리
인증제	* “수출자인증제도(자율발급제)” 사전조사 및 조사정보 DB화 * 등록기업 사후관리
AEO 제도	* “종합인증우수업체제도” 참여 유도 및 파트너십 형성 * 모든 수출입 공급망 관계 기업에 확대 구축
⑤ 원산지정보 고객 콜센터 및 컨설팅	
상담서비스	* 인터넷 서비스, 원산지규정 활용 비즈니스 모델 컨설팅

## 2. 원산지정보 관리를 위한 제도 지원

원산지증명은 자율증명 및 기관증명방식으로 구분한다. 현재 관세청에서는 기관 발급인 경우 「생산공장보유업체 지정 제도<sup>43)</sup>」를 운영 중이며, 자율발급인 경우는 수출자인증제도 도입을 준비 중에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원산지정보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해서 앞의 두 제도를 폭넓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자율발급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sup>44)</sup>」를 조속히 도입·시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제무역의 원활한 흐름과 조화시키기 위해 세계관세기구(WCO)에서 고안한 「종합인증우수업체 제도(AEO)」<sup>45)</sup>를 적극 활용하면 세관과 민간업체(수출입업체, 관세사, 운송인 등)와 협력을 함으로서 민간 기업이 선적, 입항, 외국세관 통관업무 등의 컨트롤을 지원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되면 사후에 FTA 상대국으로부터 원산지에 대한 검증 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속하게 대응하고 해결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43) 수출물품을 직접 생산하는 업체로서 세관으로부터 생산공장보유업체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생산된 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가 간소화 됨.

44) 수출물품이 특혜관세를 받기 위해서는 상대국 세관에 C/O(Certificate of Origin)제출시 별도 서류 제출없이 C/O를 간이발급하는 제도이다.

45) 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종합인증우수업체): WCO의 수출입공급망 안전관리기준 또는 이와 동등한 기준을 준수하여 자국세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국제수출입공급망의 개별당사자를 말함.

새로운 AEO 제도에 관련된 법령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가) AEO 제도의 개요.

① AEO 의의: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란 수출입 물품의 화주, 선사, 운송인, 창고업자, 관세사 등 화물의 국제적 이동과 관련된 수출입 공급망(Supply Chain)의 당사자들 중 세관에 의해 납세·법규준수·화물안전 등에 대하여 안전성과 신뢰성을 공인받은 업체를 의미한다.

② AEO 제도가 도입된 이유: 9.11테러 이후 강화된 미국의 무역안전 조치를 세계관세기구(WCO)차원에서 무역안전과 원활화를 조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수용하여 세계각국의 세관에서 이를 도입되었다. 참고로 '09.7월 기준 AEO 시행국은 미국, EU(27개국), 캐나다, 일본, 중국 등 45개국으로 전 세계 무역량의 63%, 우리나라 수출규모의 67%를 점유하고 있으며, 158개국이 AEO 이행결의서를 WCO에 제출하였다.

③ 기존의 관세행정제도와 다른 내용.

AEO 제도의 도입 전에는 물류주체별로 단편적 성실기준을 마련하여 선별적으로 통관절차의 혜택을 부여하였으나, AEO 제도 도입 후에는 모든 물류주체의 성실성을 통일화 된 기준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모든 세관절차상의 포괄적인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물류주체가 AEO인 화물에 대해서는 입항에서 통관까지 복잡한 세관절차를 하나의 절차로 통합(Non stop Free Pass)할 수 있다.

(나) AEO 제도에 따른 혜택

AEO 공인을 받으면 첫째 기업의 이미지 가치가 올라가며, AEO는 국제적으로 안

전성과 신뢰성을 인정받는 기업으로 인식되어 거래선 확보와 이미지 제고에 큰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외국의 수입업체들이 최근 자국 AEO 공인을 받기 위해 우리나라 업체에게 AEO 공인을 요구하고 있는 등 AEO 공인을 거래조건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할 수 있다.

둘째, 수출 경쟁력이 향상됩니다. 우리나라 AEO는 향후 국가간의 상호인정협정(MRA)을 통해 거래 상대국에서 화물검사 축소, 신속통관, 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을 받게 되어 통관 비용 및 시간에 있어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셋째, 관세행정상 특별한 혜택을 받습니다. 검사비용 하향 등 물품 검사상 혜택, 신고방법 간소화 등 절차상 혜택, 여러 분야의 자율관리 혜택 등을 받게 된다. 특히, AAA 등급 공인업체의 경우 관세행정상 최고의 혜택을 부여받게 된다.

#### (다) AEO 공인 적용대상 및 담당 부서

① AEO 공인 신청자: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라 수출업체, 수입업체, 관세사, 보세구역운영인, 보세운송업자, 하역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 선박회사, 항공사가 AEO 공인을 받을 수 있다.

#### ② AEO 공인업무 담당 부서

공인신청은 관세청은 관세청 심시정책국 심사정책과(AEO 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일선 세관에서는 공인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AEO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인 방식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동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된다. 따라서 공인신청업체는 동 시스템에 접속한 후 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여 직접 신청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 (라) AEO 공인심사 절차

AEO는 관세청에 의한 공인제도이기 때문에 공인상담, 컨설팅, 공인심사와 관련하여 일체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공인신청 서류를 접수한 후 AEO 심사팀은 공인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 서류심사를 합니다. 서류심사 완료 후 신청업체의 사업장 및 거래업체에 대하여 현장심사를 실시하며, 현장심사 결과 공인기준을 충족한 업체에 대해 종합인증우수업체심사위원회의 심의(審議)를 거쳐 종합인증우수업체로 공인한다.

### 3. FTA 원산지확인서 교부제 도입

#### (가) 현황 및 문제점

수출물품 최종생산자는 국내에서 조달받는 부품·원재료의 원산지를 일일이 파악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 그리고 국내 부품공급 중소기업의 원재료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비대상으로 원산지기준 협상의 기본단위 HS Code(품목분류)를 정확하게 정할 수 없어 FTA 원산지확인서 작성 등에 애로가 있으며, 수출물품의 FTA특혜 원산지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부품 등을 공급하는 중소기업의 FTA 원산지확인서가 중요한 입증(立證)서류이다. 현재, 업체로부터 FTA 원산지확인 관련 품목분류 컨설팅으로 지원한 건수를 보면 아래와 같다.<sup>46)</sup>

구 분	2008년도	2009.1~10월	계
업체/구분	2업체/223건	업체/225건	11업체/448건

#### (나) 개선방안

46) Vision 2020을 향한 품목분류 관련 워크숍(2009) 자료에서 일부 내용임

수출용 원재료 공급자의 FTA 원산지확인서 교부제도에 의하면 부품·원재료 공급자는 해당물품의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가 기록된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확인서를 작성해서 최종생산자에게 교부하고 최종생산자는 교부받은 원산지확인서를 근거로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신청)하고 원산지 입증 서류로도 활용할 수 있다(이영달, 2009). 이를 지원하기 위해 관세청에서는 국내 부품공급 중소기업체의 품목분류 지원을 위한 “내국물품 품목번호 사전확인제도”와 최종생산자의 원산지 입증부담 경감을 위해 부품·원재료 공급자가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확인서를 작성하여 최종생산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교부받은 원산지확인서를 근거로 최종생산자는 수출물품 원산지입증서류로 활용한다. 이는 FTA 수출용원재료 원산지확인서 발급대상 국내공급물품의 역내산 활용을 확대 시킬 수 있다.

#### 4. 원산지정보 관리 교육 및 홍보

FTA 체결이 급증하면서 외교통상부, 관세청, 무역협회, 지식경제부 등은 FTA 지원을 위한 FTA 포털을 개별적으로 구축하여 운영하거나 각종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FTA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장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제는 對기업 지원을 위한 원산지 규정 및 정보 관리방안에 대한 교육 및 홍보의 방법과 방향을 정부기관 중에서 수출업체들이 가장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기관인 관세청과 원산지정보관리위탁기관<sup>47)</sup>을 중심으로 관세사회를 비롯한 유관기관, 무역협회, 상공회의소 등을 활용하여 기업 실무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확대하는 것이다. 즉 원산지정보를 취급하는 관세청과 위탁기관에서 유관기관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지원하고, 이렇게 양성된 인력을 활용하여 각 기업에 대한 설명회 및 홍보를 확대하는 것이다.

47) 한국원산지정보원(09.2월 설립):수요자 입장의 민간위탁 전문기관으로 한국관세사회 부설기관으로 발족.

특히 일반적인 원산지규정의 교육 및 홍보는 물론이고 생산 공정에 따라 물품별로 부가가치 관련 정보(회계정보)의 관리, 원산지기준의 충족요건 및 방법,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작성대장 관리, 원자재 구입 및 수입내역 관리, 기타 증빙서류의 보존 등 매우 세부적인 부분에서의 원산지정보 관리방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제2절 기업측면에서의 관리체계 효율화 방안.

### 1. FTA 원산지 정보시스템 활용.

우리 기업들은 FTA를 통한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증대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관세철폐를 통한 무역자유화의 확대하는 FTA 본연의 성격에 대한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이를 통한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수행 되어야 할 의무에 대해서는 그 인지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인다.

FTA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인식해야 할 문제는 원산지규정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으로 이는 원산지 판정기준, 증명, 검증에 대한 문제이다. 앞에서 예시한 위반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실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인식하고 있어도 잘못된 원산지규정을 적용하는 문제는 피할 수 없으며, 정부 및 유관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교육, 홍보, 지원서비스(FTA 혜택사전안내 시스템)를 활용한다면 더욱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사례를 보면 아래와 같다.

(가) FTA 협정 사전안내 서비스시스템 개요.

#### ① 안내서비스 의의

고객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미리 발굴하여 고객에게 직접 찾아가 제공하는 능동적인 서비스를 사전안내서비스(Before Service)라 하며, 고객이 불편함으로 느껴 해당 기관(업체)에 찾아가 개선하여 줄 것을 요청할 경우 이때 제공하는 수동적인 서비스를 사후안내서비스(After Service)라 한다.

## ② FTA 협정 사전안내 서비스

수입물품에 대한 FTA 협정관세 미적용 건, 수출물품에 대한 FTA 상대국 협정관세 미적용 건 등 FTA 혜택을 적용받지 못한 중소기업 등을 미리 발굴 한 후, 해당 업체의 FTA 혜택 미적용 수출입신고건, 원산지발급 기준, 예상 절감액 등이 용이 가능한 혜택을 사전에 안내함으로써 종합적인 FTA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다.

### (나) FTA 협정 사전안내 시스템 접속 방법

#### ① FTA 협정 사전안내 시스템 메인화면

관세청웹사이트(customs.go.kr) 유니패스(Uni-pass)에서 “정보제공”⇒“통관정보”⇒『FTA 혜택 사전안내시스템』을 접속한다.

#### ② FTA 혜택 사전안내 시스템 로그인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은 세관으로부터 사용증인을 받은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할 수 있으며, 사용자ID는 전자통관시스템 사용 승인된 업체가 사용자 개인에게 부여하여 사용 (Password는 1개월에 1회 이상 변경 필요)한다.

[예시] FTA 혜택 사전안내 시스템을 활용한 사례.

① 수입 FTA 혜택 사전안내 시스템 활용.

먼저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 로그인하여 자사의 사업자번호로 조회 기간(최대 1년)을 설정하고 수입 통관한 물품에 대한 FTA 혜택 조회한다.

다음에 화면 우측에 수입 신고건에 대한 적용 가능한 "FTA 종류", "FTA 협정세율", "FTA 관세액", "원산지기준", "FTA 절감액" 등을 즉시 조회 가능하다.

화면 하단에는 동 조회기간 동안 FTA 혜택 적용시 환급(절감) 가능한 관세액 등을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수입 FTA혜택 사전안내 \* 실제 자료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12818  
 조회기간: 2008년 04월 02일 ~ 2009년 04월 02일 (당일) (전일) (1주) (1개월)

Page: 1/1 총건수: 3건

신고일자	수입신고번호	관세율구분	관세율	수량	세번 과세가격(원) 원산지	FTA 협정관세 가능여부		
						FTA 협정세율	FTA관세액 원산지기준	관세율구분 관세결감액
2008/10/12	31793-08-		-	1	8481.80-9000 SG 3228319	한-아세안	0	FAS1
VALVE				0		0	0	258265
A	8			258265	SG	CTH or RVC40		
2008/10/07	31793-08-		-	1	8481.80-9000 SG 8847355	한-아세안	0	FAS1
VALVE				0		0	0	707788
A	8			707788	SG	CTH or RVC40		
2008/07/13	31793-08-		-	1	8481.80-1090 SG 4101441	한-아세안	3	FTA1
VALVE				0		123043		205072
A	8			328115	SG	CTH or RVC40		
<b>합계</b>					<b>과세가격</b>	<b>관세액</b>	<b>FTA관세액</b>	<b>관세결감액</b>
					16177115	1294168	123043	1171125

위 회사는 관세 1,171,125원을 절감 가능하다.

② 수출 FTA 혜택 사전안내 시스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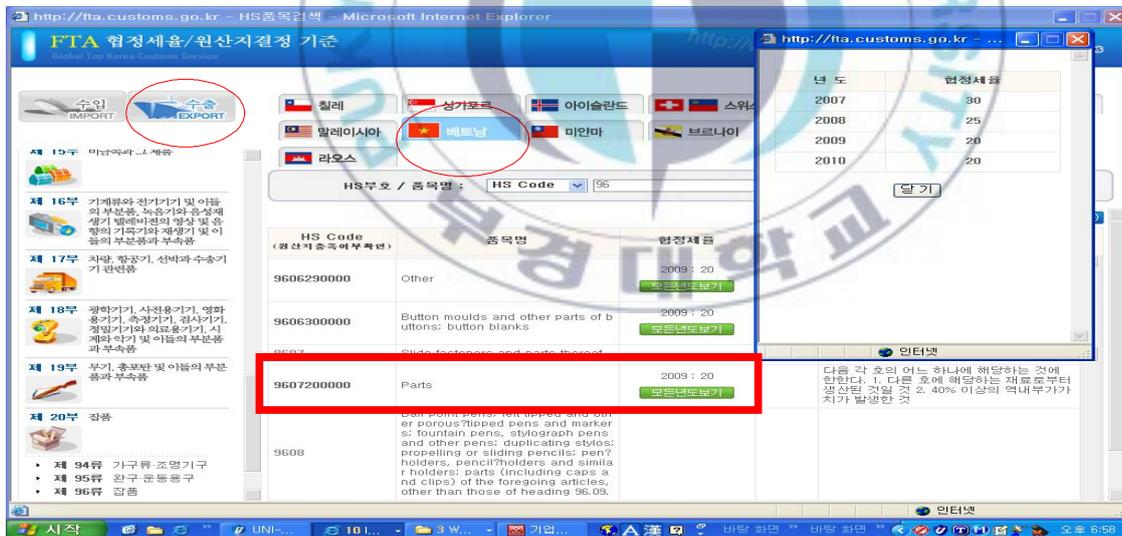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 로그인하여 자사의 사업자번호로 수출 통관한 물품에 대해 FTA 혜택을 조회할 수 있다.

여기서 수출물품의 수출 신고건에 대한 FTA 상대국가 협정관세 적용여부, "FTA 종류", "원산지기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번호	13481								
조회기간	2008년 04월 02일 ~ 2009년 04월 02일								
Page: 1/7      총건수: 70건      조회									
수출 신고 내역								FTA 수출가능 여부	
수리일자	수출신고번호	란	세번	품명	수량	신고가격 (FOB \$)	목적국	FTA	원산지기준
2008/07/24	014-10-	1	9606.10-0000	SNAP-FASTENERS	1	330	VN	한-아세안	CTH or RVC40
2008/07/24	014-10-	1	3926.90-9000	OTHER ARTICLES OF PLASTICS	2	90	VN	한-아세안	CTH or RVC40
2008/07/24	014-10-	1	5903.20-0000	TEXTILE FABRICS	20	3769	VN	한-아세안	CC or RVC40
2008/07/24	014-10-	1	5903.20-0000	TEXTILE FABRICS	27	4291	VN	한-아세안	CC or RVC40
2008/07/24	014-10-	2	5407.42-0000	WOVEN FABRICS OF	22	2846	VN	한-아세안	CTH or RVC40
2008/07/24	014-10-	1	5903.20-0000	TEXTILE FABRICS	68	10887	VN	한-아세안	CC or RVC40
2008/07/24	014-10-	2	9607.20-1000	SLIDER FOR ZIPPERS	10	2240	VN	한-아세안	CTH or RVC40
2008/07/24	014-10-	3	9607.19-1000	OPEN END FOR ZIPPERS	16	4381	VN	한-아세안	CTH or RVC40
2008/07/24	014-10-	1	3926.90-9000	OTHER ARTICLES OF PLASTICS	69	17853	VN	한-아세안	CTH or RVC40

아세안국가(베트남)에 수출하여 해당 원산지기준(CTH or RVC 40: 4단위 세번 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 40%기준 등)을 충족할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동 수출물품에 대해 HS부호와 목적국을 이용하여 관세청홈페이지>FTA 포탈(fta.customs.go.kr)>"FTA 협정세율 및 원산지기준검색"에서 FTA 수출 상대국의 협정세율 등을 직접 조회할 수 있다(베트남 수출시 협정관세 20% 적용)



## 2. 원산지 사전심사(Origin Advance Ruling)제도 이용

FTA별 원산지 규정이 복잡·다양하여 원산지 충족여부의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전심사(Advance Ruling)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사전심사제도는 한국과 칠레, 싱가포르, 미국과의 FTA에 도입되어 있다. 동 제도는 계약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와 그 대리인, 수입자가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 전에 원산지기준의 충족여부 뿐만 아니라 품목분류, 가격 또는 원가결정, 제조가공 중 발생한 부가가치 산정 등에 대해서 미리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착오 가능성을 줄여주고 있다. FTA관세특례법에는 계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할 물품의 원산지에 의문이 있는 경우 수입전에 관세청장에게 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원산지 사전심사신청제도(Advanced Ruling System)가 도입되었다.(FTA관세특례법 제14조)

사전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서류를 관세청장(원산지심사과장)에게 제출하면 관세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사항에 대해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사전 심사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사전심사서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교부일부터 3년이었으나 규칙개정으로 기간 제한이 삭제되었다. 수입자가 사전 심사서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 등을 신청하는 경우 세관장은 원칙적으로 사전심사서의 내용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도록 하여 사전심사신청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하였다.(FTA 관세특례법 제14조제3항)

사전 심사서를 교부받은 자가 사전심사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이를 안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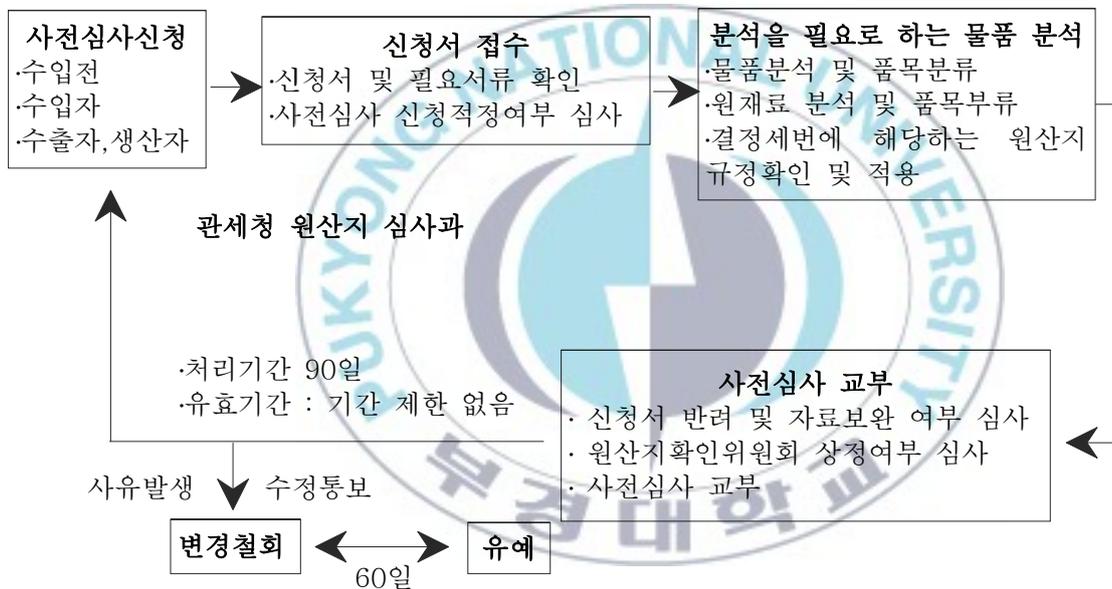
특히, 원재료의 가격 등락에 따라 원산지가 변경될 수 있는 부가가치기준 적용대상물품의 경우 사전심사 변경제도의 주요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변경내용은 원칙적으로 그 변경일자 이후에 수입되는 물품에 적용되나, 사전심사서의 변경내용이 자료제출 누락 또는 허위자료 제출 등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때에는 그 변경일 전에 수입 신고 된 물품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변경된 내용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FTA 관세특례법 제14조제4항)

이와 같은 원산지사전심사제도는 수입통관 후 세관장의 원산지사후확인에 따르는 무역업자의 불안감과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무역활동을 보장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에서 원산지사전심사 서비스(<그림3>참조)를 제공함에 따라 무역업자는 시간과 비용의 절감과 함께 무역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되고, 관세행정기관의 사후심사에 따르는 비용의 절감, 행정능률의 향상 등 상당한 장점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재정경제부 김석오, 2006)

<그림3> 원산지 사전심사 신청절차



### 3. 원산지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자동차처럼 다수의 부품을 사용하는 제조업의 경우에는 원산지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FTA 활용은 물론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특히 미국세관의 경우 수출물품 생산업체가 원산지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면 이 업체에서 생산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의 진정성에 대해 신뢰를 한다.(이영달,(2009). pp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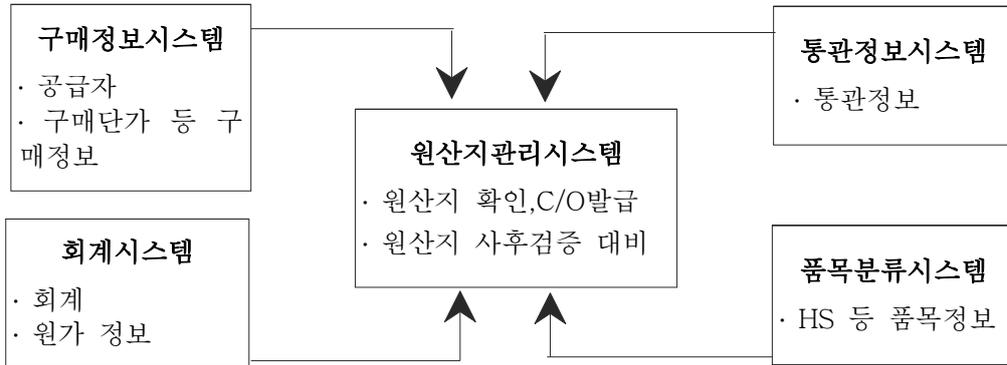
이와같이 기업차원에서도 FTA에 따른 원산지정보의 관리 필요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식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기업이 FTA 원산지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토대로 적절한 정보관리를 수행했을 경우에는 기업의 신뢰성은 물론 경쟁력 제고에 일조한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그리고 수출업체의 경우 물품에 대한 원산지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구매, 생산, 판매에 이르는 구체적인 회계자료를 포함한 전산화(혹은 서류화)된 시스템(<그림4>참조)을 구축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경우 자신의 기업뿐만 아니라 외주 또는 협력업체로부터 정확한 원산지정보(원산지통보서 등)를 넘겨받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완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의 원산지정보 관리시스템에는 원재료로부터 최종물품에 이르기까지 가공단계별로 부가가치 등이 누구에 의해서 생성되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축적되어야 한다.

결국 기업 활동과 관련되는 회계기준, 생산공정, 거래형태 등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관세청은 몇몇 우리 기업의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작업에 협력하고 있다. 이들 기업의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지원을 위해서 관세청과 유관기관(한국원산지정보원)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Joint 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해당 기업의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부품이나 원재료의 품목분류, 시스템 설계 등에 관한 컨설팅 등 기술적 지원을 하고 있다.(이영달(2009), 현안분석)

<그림4> 기업의 원산지관리시스템 개요



## 제5장 결론

자유무역협정(FTA) 내용의 일반적 특성은 무역자유화 및 관세철폐 비율의 차이, 상이한 원산지규정, 기타 무역 질서에 대한 차별화된 조치 등 법규의 복잡성으로 인해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평가와 회계지식을 필요로 하고, 세번변경기준의 적용에서도 생산공정 및 품목분류지식 역량이 요구되며 또한 운송요건을 적용하는데 국제거래와 물류체계지식이 요구된다. 이러한 역량요소의 종합성이 원산지결정기준에서 필요로 한다. 현재 FTA에 연계된 원산지규정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적용했을 경우에 우리 기업은 FTA를 통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만약 FTA 체결의 폭발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원산지규정을 적절하게 적용하지 못하거나 원산지정보 관리를 소홀하게 할 경우, 관세철폐로 인한 이익의 증대보다는 경제적 및 행정적 비용 증가로 인한 피해가 커짐으로써 FTA를 체결한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FTA 원산지규정의 복잡성 및 이로 인한 스파게티 볼 효과에 대처하기 위해서 첫째, 기업측면에서도 FTA 체결에만 관심을 가질것이 아니라 FTA를 활용하

여 관세인하 내지 철폐에 따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원산지정보의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고 원산지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에는 원산지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FTA 활용은 물론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므로 원산지관리 시스템을 구축(構築)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 및 유관기관 등의 FTA 교육 및 홍보에 관심을 기울이고, 기업내에서는 생산활동에 수반되는 각종 원산지증빙 관련 서류 등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며 FTA별 원산지기준을 정확하게 충족하기 위한 방법에도 지속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정부 및 유관기관에서도 우리 수출기업의 대외 신뢰도 제고 및 경쟁력 극대화를 위해서 FTA별로 철저하게 관리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즉 국제무역의 원활한 흐름과 무역안전을 조화시키기 위해 세계관세기구(WCO)에서 고안한 종합인증우수업체제도(AEO)를 적극 활용한다.

그리고 여러 기관에 산재해 있는 원산지관련 업무를 하나로 통합하여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전담 기관(한국원산지정보원)을 이용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는 원산지정보 관련 DB 구축, 증빙서류 준비 등 원산지정보의 포괄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인 원산지정보 관리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제는 근본적으로 기업들의 관행을 바꿀 수 있도록 기존의 생산공장보유업체 지정제도의 활성화, 수출자인증제도의 도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국내 부품공급 중소기업체의 FTA 원산지확인서 발급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내국물품의 품목번호 사전확인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역내산(域內産) 물품이 수출물품의 원재료로서 사용되어 기업의 이익이 극대화 되도록 한다.

셋째, 향후 FTA의 추진은 其체결된 FTA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와 함께 진행되어야 하며, 상대국과의 교역에서 활용률을 검토하고 FTA를 이행하고 활용하는 데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찾아내 적절한 조치(措置)를 취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정부와 유관기관에서는 기업에 대한 원산지 규정과 정보관리 방안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FTA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이론적 연구결과의 시사점과 활용방안이 논의되었지만, 여전히 본 연구결과를 활용함에 있어서는 FTA 원산지 정보관리시스템 구축과 기존의 행정제도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원산지 위반사례를 분석하여 이로부터 주의가 요구되는 원산지결정기준 핵심요소를 사용하여 FTA 협정 활용 매뉴얼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업체와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며, 여러 나라와 체결한 FTA 성과를 검토하고 종합적으로 무역자유화의 평가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미래 과제가 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성윤갑(2007), FTA 원산지 해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 최병선(1999), 무역정치경제론, 박영사.
- 정용화, 홍영선(2000), 관세율표·상품학, 박영사.
- 한국관세무역개발원(2009), HS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
- 서울본부세관 심사관실(2009), 농산물 심사업무 매뉴얼, 협동문고.
- 현후길(2004), 관세행정정보화의 성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 논문.
- 홍정식(2007), 수출입업체가 알아야 할 FTA 관세행정, 관세와무역지.
- 김기영(2009), 관세사가 알아야 할 新 FTA 제도 자료, 관세청.
- 정재완(2007), 부가가치기준에 의한 원산지의 결정방법과 그 효과, 관세와무역지.
- 이영달(2009), FTA 확대에 따른 관세행정 전략 및 기업지원 정책, 관세와무역지.
- 정인교외(2005), 우리나라 FTA원산지규정(ROO)연구 및 실증분석, 한국경제연구원.
- 김동수(2009), FTA 원산지 심사 및 사례, 관세청.
- 인천세관 심사총괄과(2009), FTA 부가가치기준사례 편.
- 성윤갑(2007), FTA 관세특례 해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 방호경(2004), FTA 원산지규정의 주요 특징과 협상에서의 시사점 실증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무역연구소 FTA 연구팀(2005), FTA협정의 주요 원산지결정기준의 비교.
- 관세청 홈페이지, FTA 포털(<http://fta.customs.go.kr>)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국 홈페이지(<http://www.fta.go.kr>)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FTA 포털(<http://www.custra.com/>)
-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한-ASEAN FTA 협정문·법령.
- 곽재석(2007), FTA 원산지규정의 구조 및 이해, 분석전문기법과정.

안재진(2008), FTA 체결 확대에 따른 원산지정보 관리의 중요성과 효율화 방안,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정승환(2008), FTA 활용을 위한 기업의 준비사항과 지원방안, 관세청.

김한성(2009), 한국 FTA 특혜관세 활용 현황 및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산세관 FTA 고객지원센터(2009), 한-인도 CEPA 활용 자료, 관세청.

부산경남본부세관(2007) , FTA 특혜통관 길라잡이 자료집.

관세청 FTA연구회(2008), 자동차 및 부품 FTA 원산지기준 해설서.

관세청 FTA연구회(2008), 섬유 및 의류제품 FTA 원산지기준 해설서.

Dorothea C. Lazaro and Erlinda M. Medalla(2006).

The Harmonized System and Rules of Origin (Hironori ASAKURA),2008.

